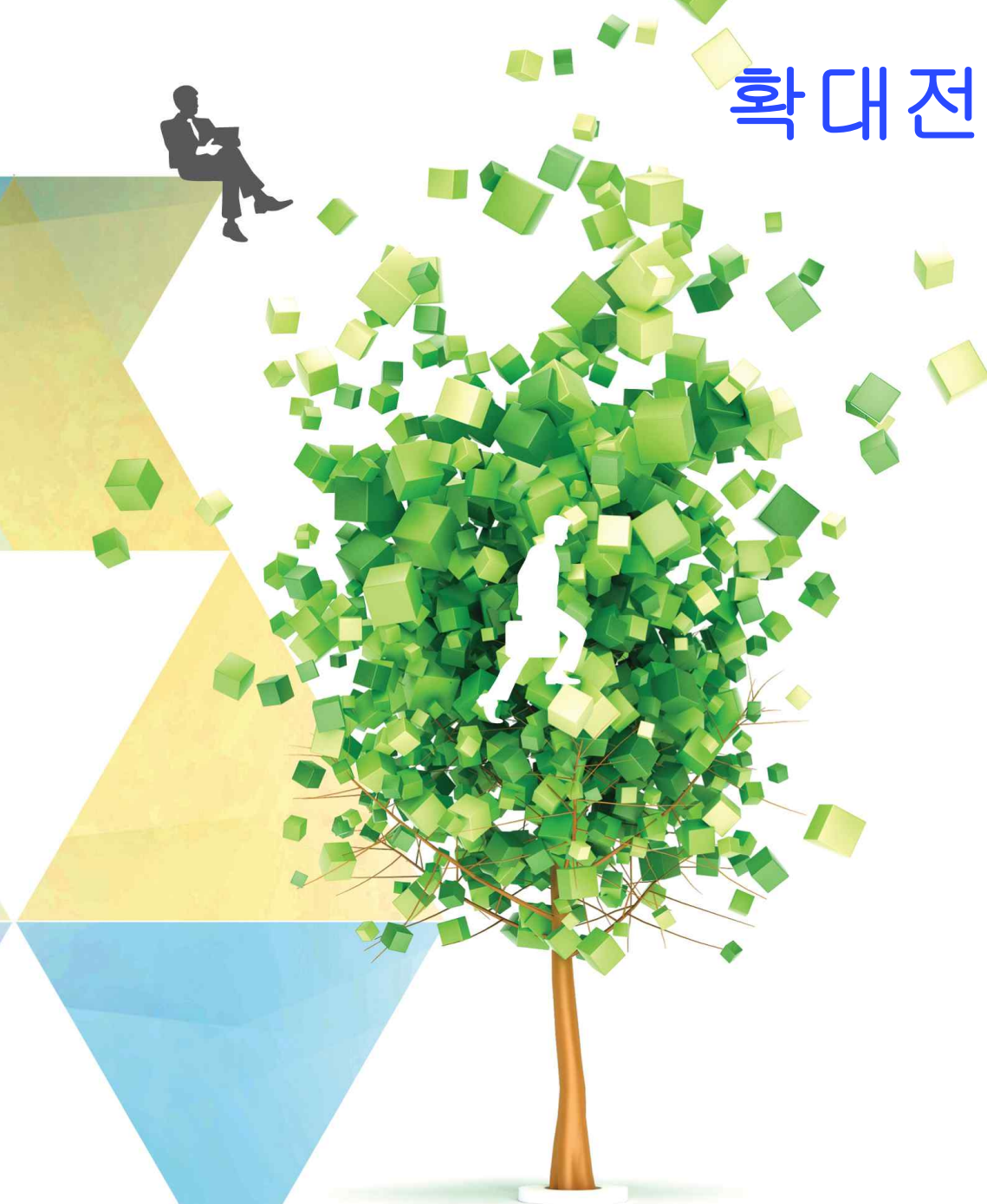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GVC 참여 확대전략 수립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II. 세계경제의 가치사슬 현황

1. Global Value Chain(GVC) 현상과 이해 3
 - (1) GVC의 등장 3
 - (2) GVC의 이론적 이해 5
 - (3) GVC 확산 속에 기업전략의 변화 8
2. GVC 현황 분석 9
 - (1) 전 세계 GVC 확산 현황 9
 - (2) GVC 내의 한국기업의 현황 및 역할 14
3. 소결론 18

III. 메가 FTA의 특징과 GVC에 미칠 영향

1. 복수국가간 메가 FTA와 통상규범상의 특징 20
 - (1) 메가 FTA의 등장과 개념 20
 - (2) 생산네트워크와 관련된 통상규범상의 특징: 원산지결정과 누적기준 22
 - (3) FTA의 원산지 누적 규정의 유형과 함의 25
 - (4) 주요 FTA에서의 누적규정 형태별 규정 유형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28
2. GVC관점에서 FTA누적규정의 복수국가간 메가 FTA 시사점 32
3. 소결론 35

IV. 한국기업의 GVC 참여현황 및 시사점: TPP 참여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대 TPP참여국의 수출 구조 분석 37
2. 한국의 대 TPP참여국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43
3. TPP로 인한 수출변화 예측 48
4. 한국기업의 베트남 섬유산업과 TPP 영향 분석 51
 - (1) 베트남의 섬유산업 현황 및 TPP로 인한 GVC 변화 52
 - (2)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아웃소싱 실태조사 58
5. 소결론 63

V. 메가FTA시대의 한국기업의 GVC 참여 확대전략 및 지원방안	
1. 코트라의 무역관을 활용한 기타업무 아웃소싱 기업의 리스팅 및 지원	66
2. GVC 상의 베트남의 중요성 및 진출 전략	67
(1) 베트남 진출 전략	67
(2) 최종소비마켓으로의 향후 베트남 활용전략 및 가능성	72
3. 메가FTA 국내 수출 활용 방안	73
(1) 양자간 FTA를 활용한 자본재 수출 증대	73
(2) 메가 FTA시대의 수출증대 전략	73
VI. 결론	76

그림 목 차

〈그림 II-1〉 전세계 무역량과 해외직접투자액 변화	3
〈그림 II-2〉 전세계 중간재 수출입액 변화	4
〈그림 II-3〉 기업의 가치사슬 확장 과정	7
〈그림 II-4〉 전 세계 무역비용 변화	7
〈그림 II-5〉 GVC 확산 요인과 과정	8
〈그림 II-6〉 전 세계 FDI 변화	11
〈그림 II-7〉 주요 개발도상국 내 FDI 비중 변화	12
〈그림 II-8〉 중국과 ASEAN의 전 세계 최종재 내 부가가치 비중 변화	13
〈그림 II-9〉 각국의 FDI의 전 세계 비중	14
〈그림 II-10〉 한국의 전 세계 최종재내 부가가치 비중 변화	15
〈그림 II-11〉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변화	16
〈그림 II-12〉 한국의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비중변화	18
〈그림 III-1〉 2014년 Big4의 전 세계 GDP 비중	21
〈그림 IV-1〉 TPP 참여국의 전 세계 GDP 비중 변화	38
〈그림 IV-2〉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수출비중 변화	39
〈그림 IV-3〉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자본재 수출비중 변화	42
〈그림 IV-4〉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중간재 수출비중 변화	42
〈그림 IV-5〉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소비재 수출비중 변화	43
〈그림 IV-6〉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수출의 부가가치기여 변화(제조업)	45
〈그림 IV-7〉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수출의 부가가치기여 변화(전자산업)	46
〈그림 IV-8〉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수출의 부가가치기여 변화(섬유산업)	47
〈그림 IV-9〉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수출의 부가가치기여 변화(자동차산업)	48
〈그림 IV-10〉 한국의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비중변화	52
〈그림 IV-11〉 베트남 섬유산업 수출의 부가가치 기여비중	55
〈그림 IV-12〉 베트남 제조업 수출의 부가가치 기여비중	56
〈그림 IV-13〉 베트남 조사기업의 핵심기능 분포	59
〈그림 IV-14〉 베트남 조사기업의 주요 고객기업 위치 분포	60
〈그림 IV-15〉 베트남 조사기업의 주요 중간재 제공기업 위치 분포	61
〈그림 IV-16〉 베트남 조사기업의 아웃소싱 활용 분야	62
〈그림 IV-17〉 베트남 조사기업의 아웃소싱을 저해하는 요인	63

〈그림 V-1〉 베트남 조사기업의 향후 비즈니스 확장 계획	68
〈그림 V-2〉 베트남 조사기업의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69
〈그림 V-3〉 OECD와 Non-OECD 국가 수출의 한국 부가가치 기여	74
〈그림 V-4〉 산업별 전 세계 최종재의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 변화	76

표 목 차

〈표 II-1〉 글로벌 거래비용 예시와 감소요인	8
〈표 II-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신규법인 수 누적	17
〈표 III-1〉 우리나라 및 주요 FTA에서의 누적규정 형태별 규정 유형 현황	29
〈표 IV-1〉 한국의 최근 수출 구조	39
〈표 IV-2〉 한국의 해외진출 자회사의 한국 내 기업을 통한 구입비중	41
〈표 IV-3〉 베트남 섬유산업 국가별 무역구조, 2013년	53
〈표 IV-4〉 베트남 섬유산업 국가별 품목별 무역구조, 2013년	53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90년대 이후 세계화(Globalisation)의 확산으로 세계 무역과 투자의 확산이 두드러짐
- 이러한 배경에서 전 세계적인 생산의 확산은 생산단계에서 국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혹은 약칭 GVC이라 명함
- 동시에 통상협정 부분에서 1990년대 이후 세계화를 주도하였던 자유무역협정(FTA)은 최근 거대 경제권이 동시 다발적으로 참여하는 메가FTA가 주도하며 전 세계의 경제 지도를 재편하고 있음
- 메가FTA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다는 특징 외에도 기존의 양자간 FTA와 규범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차별되는 특징을 가지며 또한 앞에서 설명한 GVC 확산 속에 그 영향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국제 경제의 GVC확산과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GVC현상에 대한 이해와 최근의 통상협정의 주된 흐름인 메가 FTA에 대한 이해 필요
- 이를 통하여 한국 기업의 GVC 참여 확대 방안과 수출 증대에 대한 전략 도출 및 고찰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생산네트워크의 확대인 GVC와 최근 통상협정의 흐름인 메가 FTA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한국 기업의 GVC참여 방안에 대한 함의 도출에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우선 GVC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GVC 확산이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
- 또한 최근 전 세계 및 한국의 GVC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 세계 다국적기업의 이동을 통한 가치사슬의 이동 그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가치사슬 기여 변화 등을 다방면의 데이터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분석
- 그리고 최근의 무역협정의 주된 흐름인 메가FTA를 규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 후 앞에서 논의한 GVC 확산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
- 다음으로 앞에서 논의한 GVC와 메가 FTA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타결된 복수 간 메가 FTA인 TPP 참여국과의 수출 현황 분석과 향후 수출 변화를 분석하고 진단
- 마지막으로 최근 GVC현상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베트남과 베트남 섬유산업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베트남 내 GVC 참여 현황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질적 서베이를 통하여 앞에서 논의된 GVC의 확산과 메가FTA에 대한 시사점을 적용함으로서 한국기업의 GVC하의 경쟁력 제고와 참여에 대한 전략과 함의를 도출함
- 본 연구의 목표는 GVC와 메가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GVC의 확산과 메가FTA의 활용에 대한 분석의 기초연구를 제공함에 있음을 명시

Ⅱ. 세계경제의 가치사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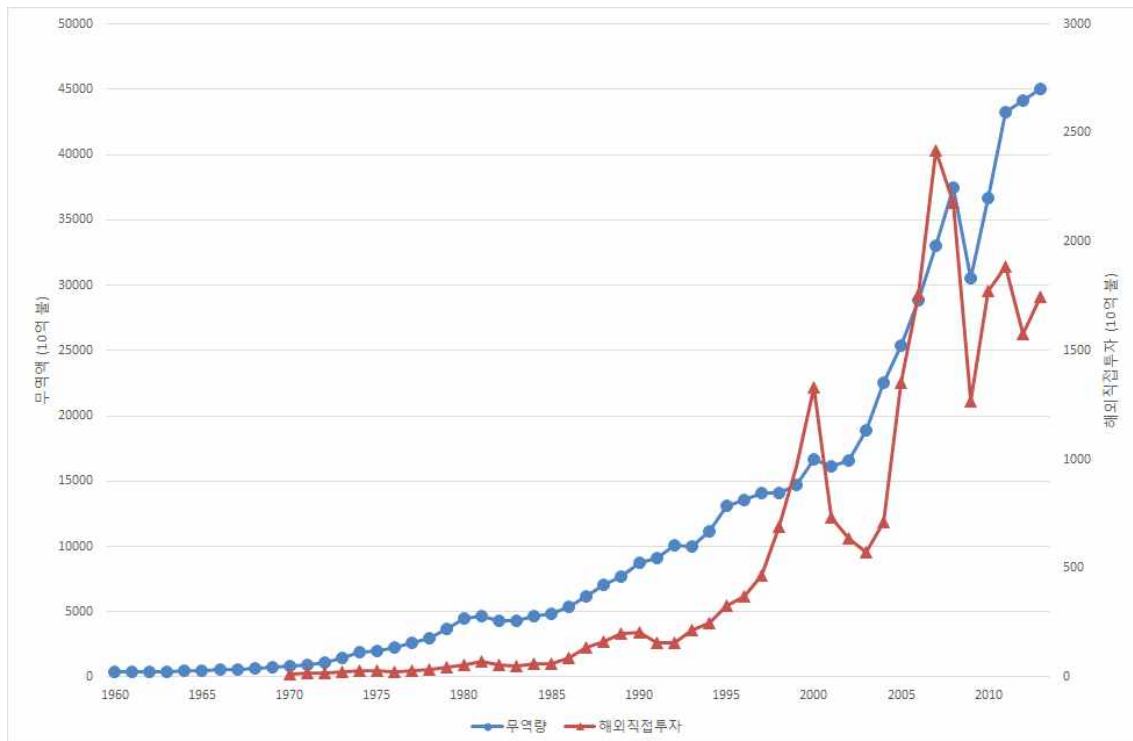
1. Global Value Chain(GVC) 현상과 이해

(1) GVC의 등장

○ 생산의 세계화와 무역의 확대는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현상

-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 초 2천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1조 7천억 달러로 8배 이상 증가
- 세계무역액은 동일 기간 10조 달러 수준에서 45조 달러로 4배 이상 증가
- 〈그림 Ⅱ-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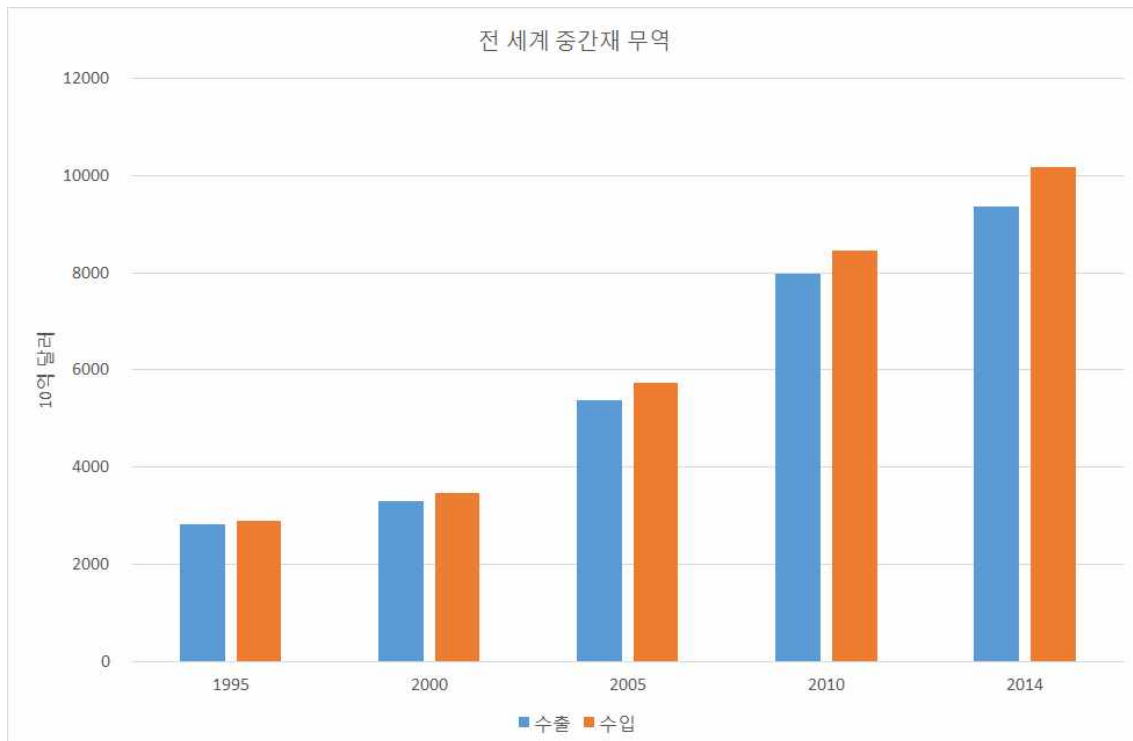
〈그림 Ⅱ-1〉 전 세계 무역량과 해외직접투자액 변화



참조 :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무역의 증가와 기업의 해외진출확대는 생산과정이 보다 분업화 되고, 분업화된 생산과정이 다수의 국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기인¹⁾
 - 하나의 상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국가에 위치한 기업이 생산과정에 참여
- 분업화 과정에서 각 생산과정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국가를 넘어서는 중간재 혹은 중간서비스의 수출, 수입이 늘어나며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가가치 사슬이 형성됨
 -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중간재 무역은 3배 이상 증가함
 - <그림 II-2> 참조

<그림 II-2> 전 세계 중간재 수출입액 변화



참조 : COMTRADE, BEC 코드를 이용한 중간재 구분 이용

- 이러한 세계경제의 분업화 현상을 Global Value Chain(GVC) 이라고 지칭

1) Yi (2003)은 1990년대 이후 무역증가의 원인이 단순히 자유무역협정 등의 무역 비용의 증가로 모두 설명되지 않으며, 이러한 증가의 많은 부분이 한 상품생산을 위한 다수의 국가가 다수의 단계를 거치는 Intra-industry trade의 증가로 설명됨을 보임.

- 세계적인 생산의 분업화 현상은 Fragmentation, Intra-industry trade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언급되었으나 이후 듀크 대학의 Gary Gereffi가 Global Value Chain이라고 지칭함 (Gereffi(1994) 참조)

(2) GVC의 이론적 이해

- 앞에서 설명한 최근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인 GVC의 이론적 이해를 통하여 GVC 확산 속에 기업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
- GVC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근거는 기업의 범위(Boundary of a Firm) 이론
 - Adam Smith(1776)로부터 시작된 경제학의 가장 기본원리는 분업화와 집중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음
 - Division of Labor 혹은 Labor Specialization로 지칭
 - 그러므로 경제학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기업은 분업화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생산부문에만 집중하여야 함
 -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만 집중하고 기타 생산에 필요한 지원업무 혹은 부가적인 생산 활동은 위탁(Outsourcing)하여야 함
 - 하지만 Coase(1937)에 따르면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단위의 작은 기능(Function)으로 최적화하고 집중할 수 없음
 -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설계, 관리, 유통, 개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업무와 기능을 동시에 수행
 - Coase(1937)는 기업이 이런 생산에 필요한 부가적인 다양한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하는 이유에는 기업 간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에 있다고 지적함
 - 위탁을 하는 경우 중간재 운송비용, 비밀정보 관리비용, 감시관리비용 등이 추

가적으로 발생

- 특히 이러한 거래비용이 분업을 통한 집중화로 얻는 효율성보다 큰 경우 기업은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기업 내에서 수행

○ 이러한 논리에서, 반대로 거래비용이 낮아질 경우 기업은 자신의 가장 주요기능(Core Function)에 집중하고 부가적인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게 될 인센티브가 높아짐

- 가장 주요한 핵심기능(Core Function)은 해당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부가가치 혹은 수익을 보장²⁾

- 기타 생산에 필요한 다른 지원기능을 외부의 가장 효율적인 기업들에 위탁

○ 기업이 핵심기능에 집중하고 기타 생산에 필요한 다른 지원기능들은 기타 기업들에 위탁하게 되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간재(Intermediates) 및 중간서비스(Intermediate Services) 거래 발생

- 위탁과정에서 한 가지 최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및 중간서비스의 거래가 발생하고 이러한 거래 속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기업 간의 가치사슬 구축

- 〈그림 II-3〉 참조

○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의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아웃소싱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동시에 부가가치 사슬이 확산

- 전 세계적으로 무역비용이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감소하고 있음

- 〈그림 II-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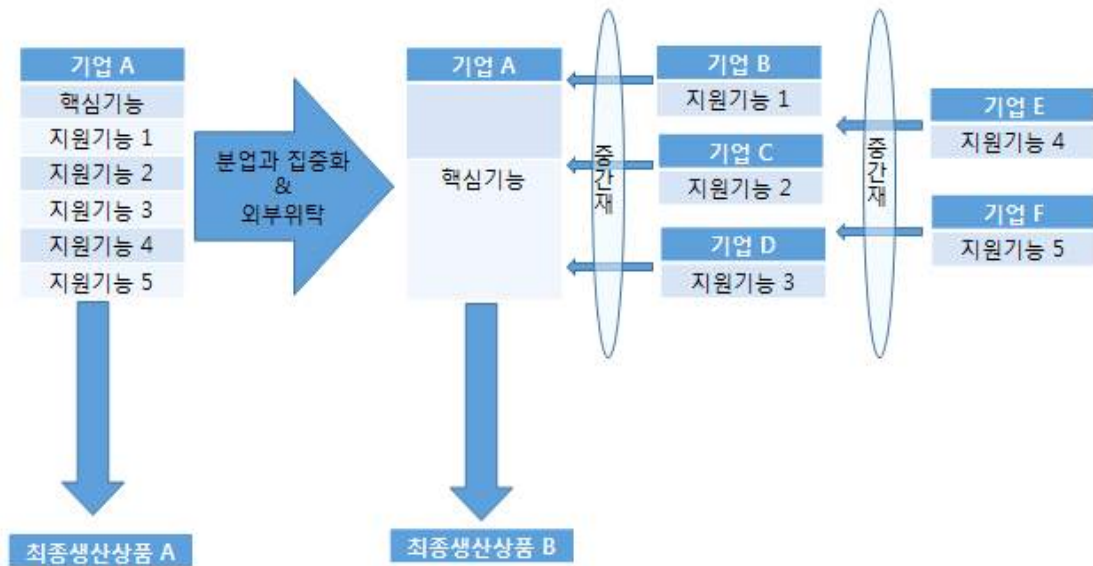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거래 비용의 감소는 관세, 비관세 장벽의 감소와 운송

2) 주의할 것은 이러한 핵심 기능이 단순히 고부가가치 산업 혹은 업무만을 의미하지 않고 각 개별 기업이 가진 고유한 핵심기능을 의미함. 예를 들어 전자산업의 경우 한 기업은 R&D의 기능이 핵심기능일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산업 내 조립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가지는 기업 또한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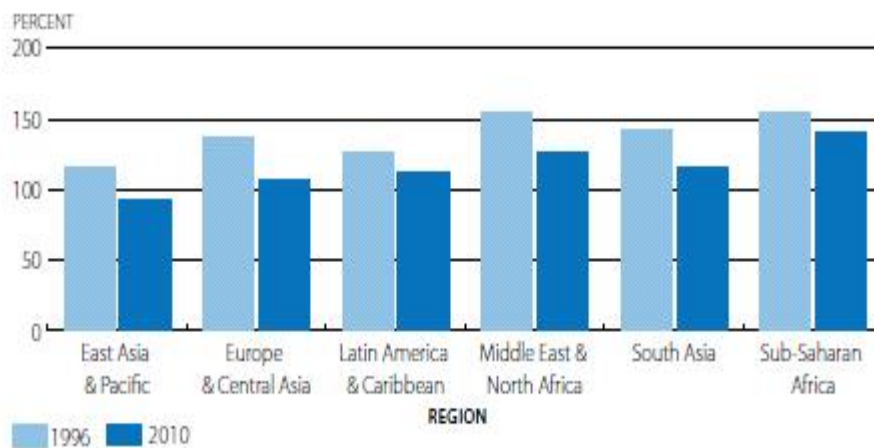
비용 등의 감소를 꾀할 수 있음

- 거래비용의 예시와 감소요인은 <표 II-1> 참조

<그림 II-3> 기업의 가치사슬 확장 과정



<그림 II-4> 전 세계 무역비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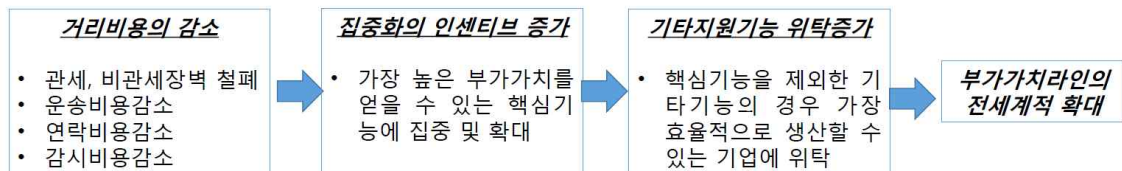
참조: AID for Trade at Glance 2015 (OECD)

〈표 II-1〉 글로벌 거래비용 예시와 감소요인

글로벌 거래비용 예시	감소요인
관세장벽	GATT, WTO, FTA
비관세장벽	GATT, WTO, FTA
운송비용	운송기술발전
연락비용	텔레커뮤니케이션기술 발전
감시비용	정보기술발전

- 지속적으로 기업 간 그리고 국가 간의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 사슬은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됨
 - 이는 I 장에서 지정한 1990년 대 이후의 세계 경제의 GVC 확장과 일치
 - 〈그림 II-5〉 참조

〈그림 II-5〉 GVC 확산 요인과 과정



(3) GVC 확산 속에 기업전략의 변화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 간의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이전의 고전적 기업은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단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
- 반면 GVC의 확산 속에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타 기능들은 위탁하고 해당 기업의 핵심기능에 집중
- Gereffi et al (2005)에 따르면 이러한 GVC의 확산으로 인하여 기업들 아래와 같은 전략적 변화 추구

- 1) 다국적 기업 내의 수직적 연계를 약화
 - 2) 그들의 핵심경쟁력 부문을 재고
 - 3) 혁신, 생산전략, 생산공정, 마케팅 등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단계에 집중
 - 4) 그들의 비핵심경쟁력 부문, 일반적인 서비스나 다량생산에서 직접적인 통제를 자제하고 위탁(Outsourcing)
- 기업은 핵심경쟁력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생산활동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혹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추구
 - 그러므로 GVC 확산으로 인하여 기업은 핵심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와 집중화를 기업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추구하여야 함
 - 반대로 전문화와 집중화를 통하여 핵심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기업과의 경쟁심화로 인하여 퇴출될 위험 증가
 - GVC 하의 경쟁기업들은 전문화와 집중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는 기업 간 경쟁의 심화

2. GVC 현황 분석

(1) 전 세계 GVC 확산 현황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GVC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 거래비용의 감소로 인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
- 특히 이러한 GVC 확산의 핵심적인 역할은 다국적기업이 중심이 되고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은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
- 2009년 전 세계 약 82,000 다국적 기업이 약 810,000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

였고 이러한 해외자회사들이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1/3 담당³⁾

- 미국 전체 수입의 45% 그리고 수출의 40%는 다국적 기업의 기업 내 무역으로 발생⁴⁾
- 1990년 이후 GVC의 확산이 시작된 시기와 다국적기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 증가된 시기가 동일함

○ 특히 199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국가로 개발도상국이 부각됨

-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 세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FDI의 투자대상국으로 개발도상국의 비중도 높아짐
- 노동비용 및 기타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조립, 생산 기능이 이전한다는 Vertical FDI 유형으로 설명⁵⁾, Helpman (1984)
- 이는 앞에서 소개한 Gereffi et al (2005)의 GVC하의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서 대량생산을 개발도상국으로 위탁한다는 주장과 일치
- 2009년 Great Recession 이후 개발도상국내 FDI 비중은 선진국의 비중을 초월
- <그림 II-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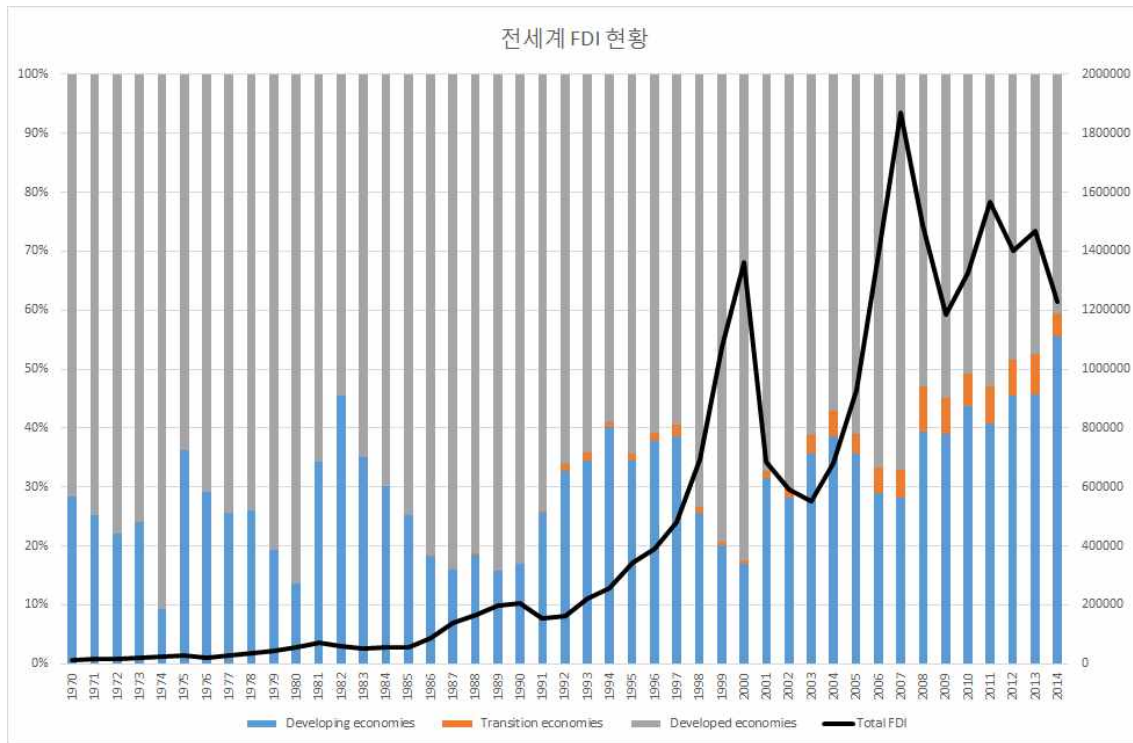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FDI 비중의 증가는 중국 내 외국인투자증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3) UNCTAD(2010)

4) Bernard, Jensen, and Schott(2009)

5) 반면 Horizontal FDI의 경우 무역비용을 피하기위해서 생산기지를 소비시장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으로의 다국적 기업의 이전을 설명함, Markusen (1984)

〈그림 II-6〉 전 세계 FDI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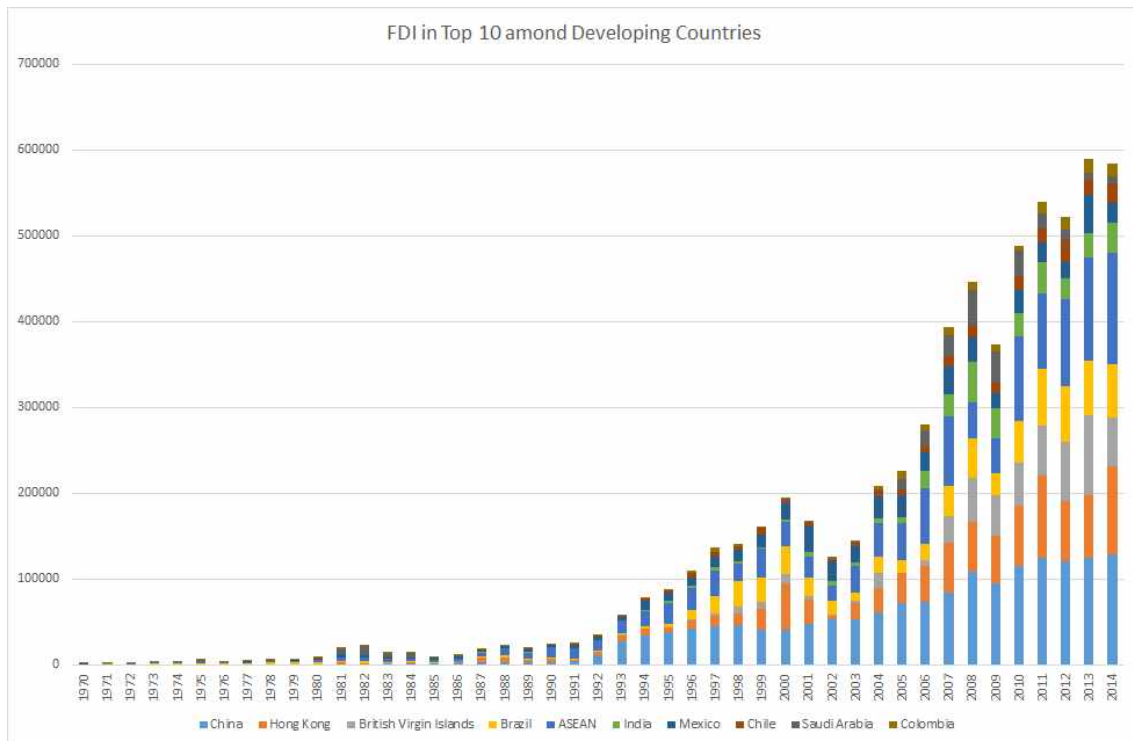


출처: UNCTAD

- 반면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으로의 FDI 증가추세는 완만해진 반면 아세안 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가 급격히 증가함
 - 2000년대 후반 이후 아세안 국가 중 특히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가 두드러짐
 - 〈그림 II-7〉 참조
- 중국과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전 세계 제조업 생산 상품의 수요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또한 증가
 - 1995년 중국의 전 세계 제조업 내 최종수요의 부가가치 비중은 3.3% 수준에서 2011년 17.4%로 상승⁶⁾

〈그림 II-7〉 주요 개발도상국 내 FDI 비중 변화

6) OECD TiVA 자료의 한계로 APEC, NAFTA, Europe을 전 세계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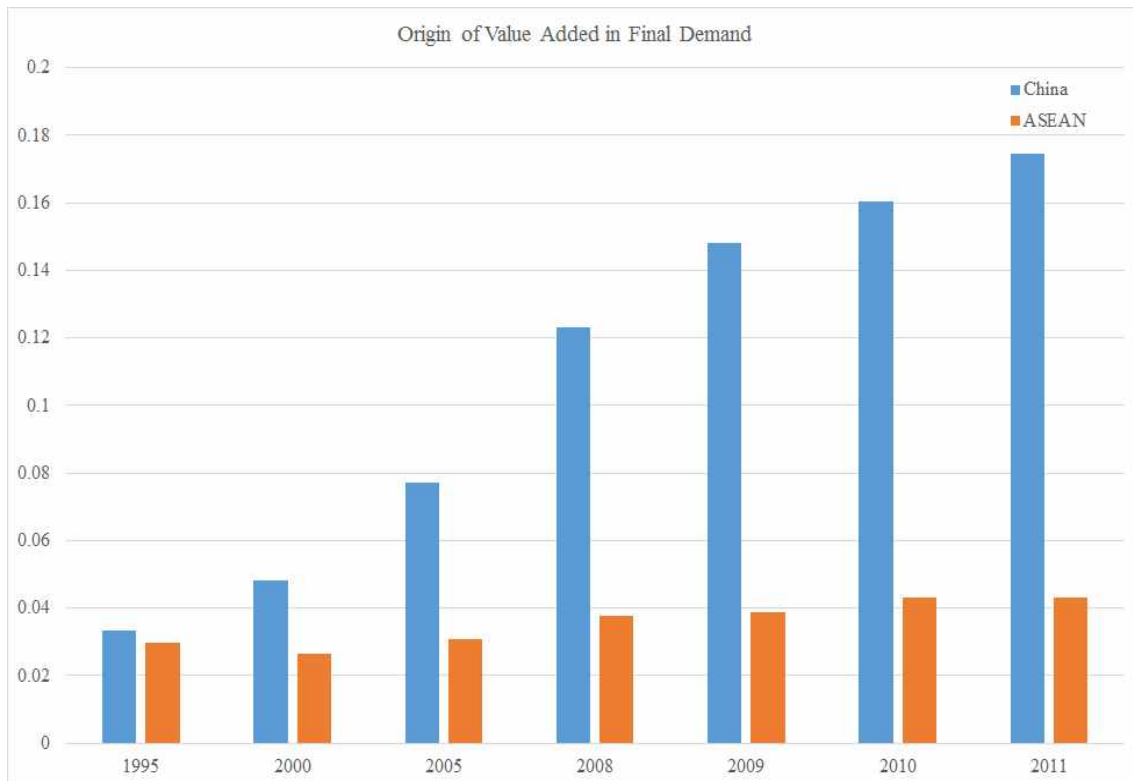


출처: UNCTAD

- 1995년 아세안의 전 세계 제조업 내 최종수요의 부가가치 비중은 3.0% 수준에서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4.3% 수준
- <그림 II-8> 참조

○ 이는 1990년대 이후 GVC하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확산되고 제조 생산품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기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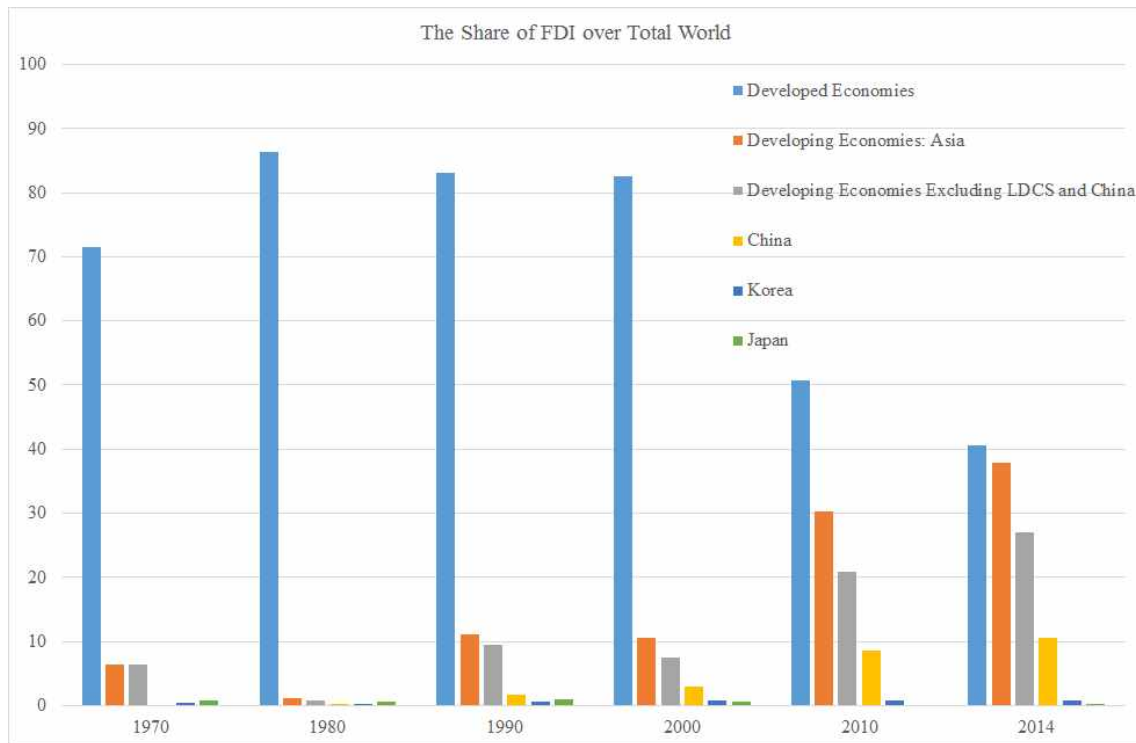
〈그림 II-8〉 중국과 ASEAN의 전 세계 제조업 최종재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출처: OECD TiVA Database

- 1990년 이후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와 2000년 이후 아시아 개발도상국 특히 아세안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80년을 정점으로 선진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율은 감소함
 - 〈그림 II-9〉 참조
- 중국과 아세안으로의 해외기업진출로 이들 지역의 전 세계 최종재 내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또한 이들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아시아 개발도상국, 특히 아세안의 GVC상의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9〉 각국의 FDI의 전 세계 비중



출처: UNCTAD

(2) GVC 내의 한국기업의 현황 및 역할

○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제조업 최종재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는 1990년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음

– 1995년 한국의 전 세계 부가가치 기여는 2.4% 수준에서 2011년 2.7% 수준으로 소폭 상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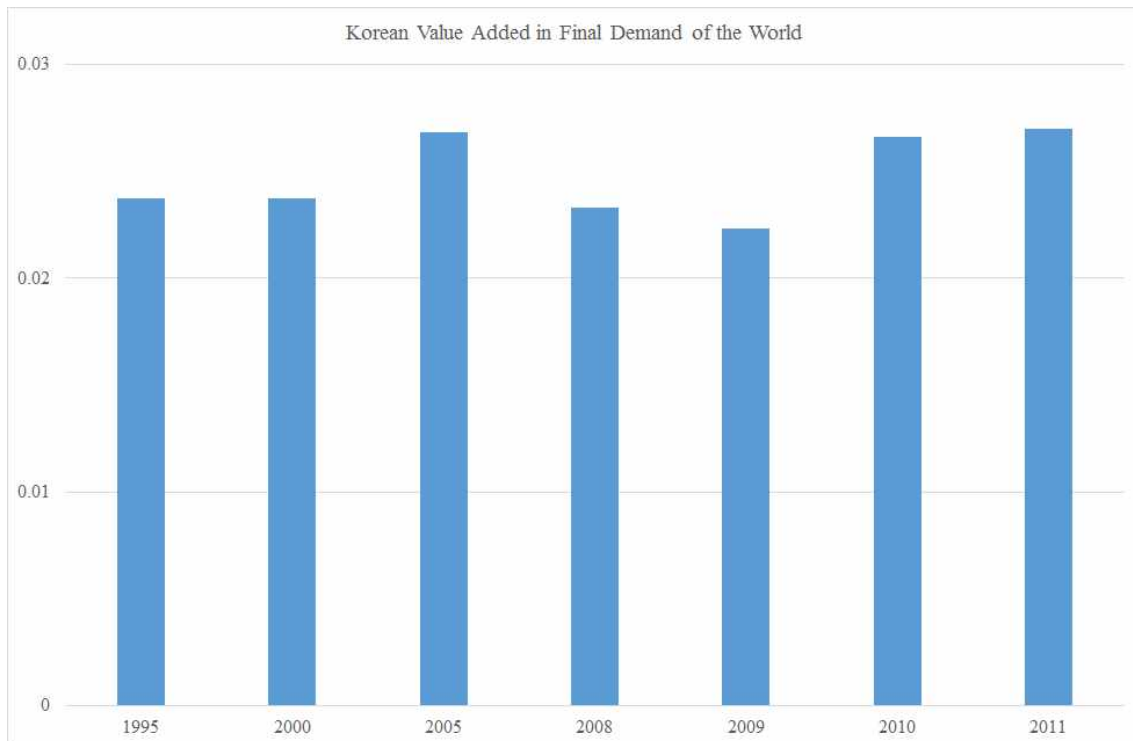
– 〈그림 II-10〉 참조

– 이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의 결과로 판단됨

7) OECD TiVA 자료의 한계로 APEC, NAFTA, Europe을 전세계로 고려

- 빠른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의 GVC 상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은 크게 증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10〉 한국의 전 세계 제조업 최종재 부가가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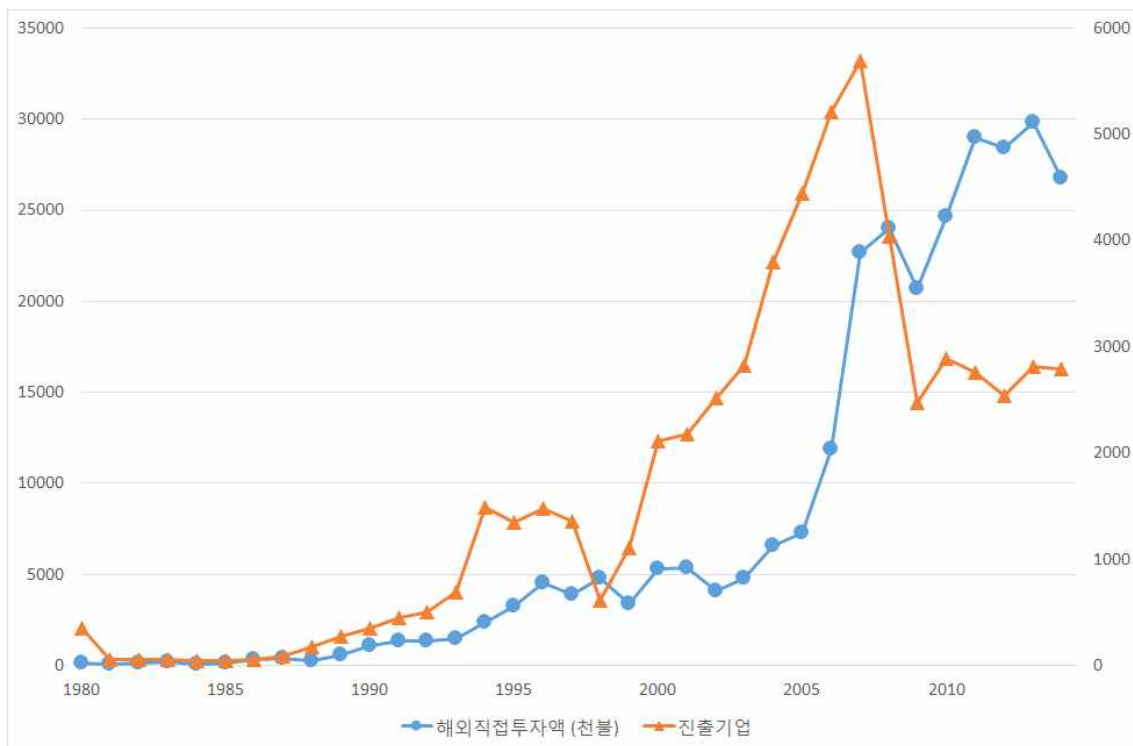
출처: OECD TiVA Database

-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부가가치 기여도만으로 한국의 GVC 참여 현황을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한 경우 해외진출 기업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한국내의 부가가치가 아닌 진출 국가의 부가가치에 포함됨
 - 예를 들어, 베트남의 삼성 법인의 전 세계 부가가치 기여도는 한국을 모기업으로 하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부가가치 기여에 포함됨을 주의
- 그러므로 한국 기업의 GVC 참여 현황 분석을 위해선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GVC 참여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함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또한 1990년 대 이후 점차 증가되기 시작함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액은 6배 이상 증가
- 2009년 선진국 금융위기 이후 1천5백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해외 진출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그림 II-11〉 참조

〈그림 II-11〉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변화



- 1990년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진출은 미국, 중국, 홍콩 그리고 베트남 순
- 해외진출 기업 누적 수에서는 일본이 4번째 위치

- <표 2-2> 참조

<표 II-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신규법인 수 누적

순위	국가명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천불)	신규법인수 (누적수)
1	미국	58,993,848	11,957
2	중국	50,098,336	24,409
3	홍콩	16,080,328	1,714
4	베트남	11,872,746	3,485
5	오스트레일리아	10,613,155	599
6	네덜란드	10,310,494	171
7	영국	10,148,523	297
8	캐나다	8,930,124	585
9	케이만군도	8,871,094	212
10	인도네시아	8,219,614	1,706
11	싱가포르	7,287,140	618
12	브라질	5,940,124	254
13	일본	5,582,859	2,422
14	말레이시아	4,775,990	661
15	독일	4,161,023	414
16	멕시코	3,759,108	283
17	인도	3,716,445	693
18	필리핀	3,243,772	1,455
19	아일랜드	3,211,257	33
20	버뮤다	2,733,352	22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1990년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중국과 미국에 이루어진 반면, 200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아세안 특히 베트남의 비중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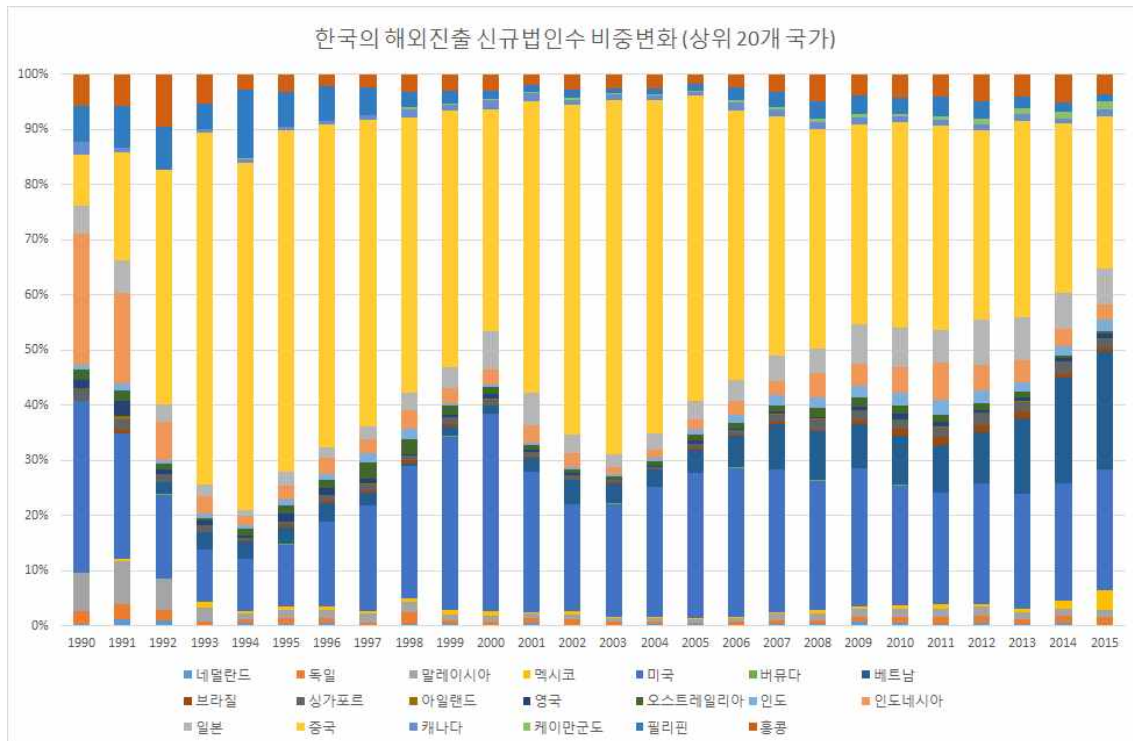
- 베트남의 신규기업진출은 최근 5년 동안 급격히 상승

- 2014년 전체 상위 20개 국가 중 베트남으로의 신규기업진출은 20%를 상회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아세안 국가 또한 한국의 최근 주요 해외직접투자처로 부상

- <그림 II-12> 참조

〈그림 II-12〉 한국의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비중변화



- 이는 앞에서 지적한 전 세계 GVC의 아시아 개발도상국 특히 아세안으로의 확장 현황과 일치함
- 결론적으로 한국의 GVC 확대도 앞에서 설명한 전 세계의 GVC 트렌드와 동일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

3. 소결론

- 최근 전 세계 경제의 중요한 현상인 GVC 확장 속에서 기업들은 핵심기능에 집중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기타 지원기능은 아웃소싱
- 이러한 측면에서 핵심기능부문에 전문화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 증대

- 1990년대 이후 GVC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기지 기능이 확대되어갔으며 2000년대 이후 아세안지역 중 베트남이 중요한 생산 기지로 부상 중
- 한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GVC 참여 또한 전 세계의 트렌드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됨
 - 1990년대 이후 중국에 이어 2000년대 아세안지역 중 특히 베트남이 중요한 투자처로 부상

III. 메가 FTA의 특징과 GVC에 미치는 영향

- III장에서는 최근 FTA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 FTA의 등장 배경과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메가 FTA의 특징이 II장에서 논의한 GVC 확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며, 그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도출을 목적으로 함

1. 복수국가간 메가 FTA와 통상규범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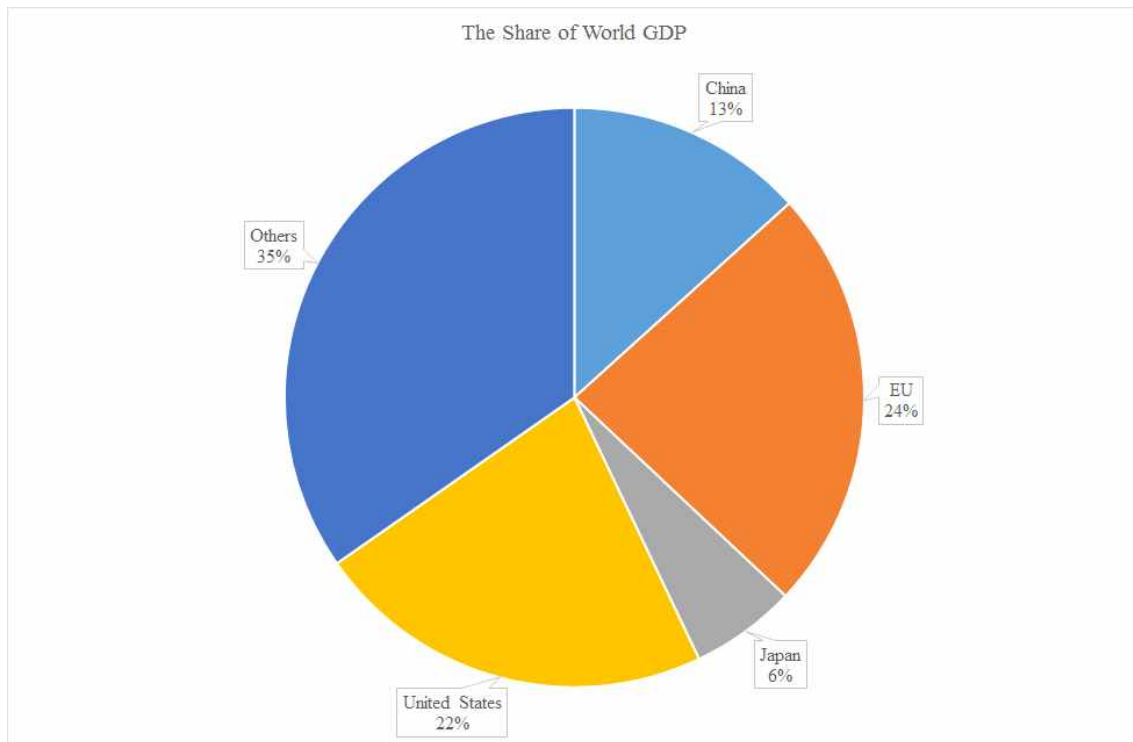
(1) 메가 FTA의 등장과 개념

- 1995년 이전의 GATT를 바탕으로 규범과 조직의 양 측면에서 잘 구축된 다자간무역질서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
- 하지만, 2001년 개시된 제 1차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자 회원국들의 DDA협상에의 관심저하
-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대 이후 WTO 회원국 간에 교역조건과 무역상의 대우를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심이 집중
 - FTA의 경우 협정국의 상품 및 기업에게만 보다 유리한 교역 조건과 무역상의 대우를 배타적으로 부여
 - 1994년 47개에 그쳤던 FTA는 2000년에는 93개로 증가하고 2014년 7월 기준으로 585개로 급증
- 특히 2009년 Great Recession 이후 위축된 무역과 투자를 회복시키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소위 4대 거대경제권(이하 Big4)들이 추진하는 FTA에 관심 증대
 - 실제로 최근들어 Big4들이 관련된 FTA 협상이 개시⁸⁾

8) 대표적인 사례가 (i) 현재 서명과 비준절차가 남아있는 미국 주도 하에 12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Trans-Pacific

- 경제적 관점에서 최종판매 수요처로서 Big4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 경제의 2/3 수준이라는 점에서 Big4의 참여여부는 FTA로 인한 권역 내 시장규모에 큰 영향
- 4개 거대경제권의 GDP합은 2014년 전 세계 GDP의 65% 차지
- 특히 Big4 중 2개의 경제권이 참여하는 FTA의 경우 전 세계 GDP의 최소 20%에서 최대 46%를 차지하는 시장을 FTA권역 내 확보

〈그림 III-1〉 2014년 Big4의 전 세계 GDP 비중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그러므로 2010년대 들어 추진되기 시작한 경제적 의미의 “메가 FTA”라 함은 일반적으로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큰 4대 거대경제권 가운데 2개 이상 참여하는 FTA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Partnership(TPP)협정 협상, (ii) 중국 주도 하에 ASEAN(10개국) + 6(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협정 (iii) 미-EU간의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협정 그리고 (iv) 한중일 3국간 FTA 등임.

- 이는 단순히 FTA 협상에 참여하는 복수국가의 수가 아닌 FTA 타결로 인하여 형성되는 자유무역지역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FTA 분류 명칭
- 따라서 이들 Big 4 중 2개 이상이 참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FTA는 복수국간 FTA에 해당될 뿐 메가 FTA로의 경제적 의미가 낮음
- 예를 들어 한-ASEAN 경우 복수국간 FTA는 해당되지만, 경제적 의미의 메가 FTA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음
- 특히 GVC와 관련하여 부가가치 사슬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판매처로 Big 4 중 2개 이상의 시장이 FTA 권역내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메가 FTA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2) 생산네트워크와 관련된 통상규범상의 특징: 원산지결정과 누적기준

- GVC는 최종판매처로의 상품 혹은 서비스가 판매되기 이전에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국가들 간의 통상규범상 관세영역이 중요한 이슈임
- 예를 들어 생산과 최종판매를 위하여 다수의 국가에 걸쳐 생산이 되고 거래되었다면, 다수의 국가 간 상품의 이동과정에서 각 국가별로 복수의 관세가 부과됨
- 통상규범적 관점에서 FTA의 분류는 협정에 참가하는 관세영역의 숫자를 기준으로 양자간(Bilateral) FTA와 복수국간(Plurilateral) FTA 간의 구분만이 의미를 가짐
- 2개의 관세영역 간에 체결된 FTA가 양자간 FTA이고, 3개 이상의 관세영역이 참가하는 FTA의 경우 복수국간 FTA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한 개의 국가는 하나의 관세영역을 가짐

- EU의 경우 28개의 국가가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28개 각 회원국이 각국의 관세 주권을 EU에 위임한 관계로 1개의 관세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EU FTA는 양자간 FTA로 분류
- ASEAN은 10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지역에 해당하지만, 각 회원국이 관세 주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ASEAN FTA는 복수국간 FTA로 분류하게 됨.
- 따라서 통상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메가 FTA는 복수국간 FTA 또는 양자간 FTA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일 뿐 메가 FTA 자체로서 달리 통상규범상 대우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이에 따르면 복수국간 메가 FTA라 함은 4개의 거대경제권 중 2개 이상이 반드시 참여와 추가로 관세영역을 가진 국가가 참여하는 FTA를 가리킴
 - 상술한 복수국간 메가FTA의 경우 TPP, RCEP 그리고 한중일 FTA가 해당
- 양자간 메가 FTA라 하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4개의 거대경제권 가운데 2개 경제권만이 참여하는 FTA를 가리킴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과 EU간 TTIP협정이 이에 해당됨.
- GVC의 경우 국가 간의 생산네트워크 및 부가가치 사슬 형성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FTA협상에서 관세의 혜택에 중요한 결정요인인 원산지 규칙(Rules of Origin)이 가장 큰 연관성이 있음
 - FTA협정 중 원산지 규정도입이 배타적 비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 특히 원산지규칙에 있어서 앞으로 논의할 누적(Cumulation) 기준이 가장 직접적인 GVC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자간 FTA보다는 복수국간 FTA에 도입될 경우 그 활용 측면에서 효과가 클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기준 타결된 양자간 메가 FTA는 전무하고,

복수국간 메가 FTA로서는 TPP협정이 유일한 상황

- 원산지규칙이라 하면 상품의 원산지국가(the country of origin)를 판정하는데 적용되는 국가의 법률, 규칙 및 행정적 결정을 의미함⁹⁾
- 이러한 원산지 규칙은 FTA협정에 따른 특혜대우의 부여 및 이러한 특혜의 FTA 비협정국으로의 역외유출 내지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
- 그간 체결된 FTA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이 적용
 -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어느 제품이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경우 적용
 - 실질적 변형기준의 경우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
 - 그러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i) 세번변경기준, (ii) 특정가공공정기준[기술테스트방법] 및 (iii) 부가가치기준[일정비율기준 방법] 등 3가지 주요 기준[방법]이 이용되고 있음
- FTA의 원산지규칙에서는 상술한 제품에 특화된(product-specific) 원산지결정의 일반기준 이외에 보충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누적기준(cumulation rules)이 그러한 보충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의 하나임¹⁰⁾

9) WTO 원산지규칙협정 제1조제1항. 구체적으로 WTO 원산지규칙협정 제1조제1-2항 따르면, 원산지규칙은 다시 (i) GATT 1994에 따른 최혜국대우 또는 그 밖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원산지표시요건 및 차별적인 수량제한조치 등과 같이 비특혜적인 통상정책조치의 적용에 있어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칙(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ii) GATT 1994 제1조 제1항상 최혜국대우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이나 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특혜무역협정 또는 일부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련 법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등과 같은 자발적인 특혜무역제도의 운용에 있어 이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칙(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됨

10) 참고로, 이밖에 자주 이용되는 보충적인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or tolerance rules)이나 흡수기준(absorption/takeover principle) 등이 있음

- 특히 GVC와 관련하여 원산지의 누적규정이 도입되면, 역내 생산자들이 생산한 최종 생산 제품이 협정상 특혜적 지위를 상실함 없이 특정된 원산지로부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 특혜적 지위의 대표적인 예는 배타적 비관세 지위를 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FTA의 누적규정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 외의 원산지의 상품이 최종 상품 생산 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투입되는 것을 허용하고 비관세 지위를 유지
- 그러므로, FTA 누적규정의 도입은 협정 권역 내 투입부품이나 재료의 조달과 제조공정의 이용을 촉진하여 주게 된다는 점에서 GVC 활용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짐
- 누적규정은 최종 상품이 동 협정상 특혜원산지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채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투입을 누적시켜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제도
- FTA 역내 생산자들로 하여금 최종 상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

(3) FTA의 원산지 누적 규정의 유형과 함의

- FTA에서의 원산지 누적규정에는 크게 양자간 누적, 완전누적 및 유사누적 등 3가지의 유형이 있음

1) 양자간 누적(bilateral cumulation)

- 양자간 누적은 FTA 당사국 중 어느 한쪽 당사국(A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부품/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B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A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부품/재료는 B국의 원산지로 간주됨

- 즉, FTA의 A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부품/재료는 B국의 원산지로 간주되어 당해 협정상 특혜 원산지 지위[대우]를 부여 받게 됨을 의미
 - 원산지결정의 보충적인 기준으로서 이용되는 누적규정의 기본 형태
 - 또한 양자간 누적에서 이들 FTA에서는 공통의 원산지규칙을 갖고 있고 이들 FTA 당사국들 간의 모든 무역은 단일의 FTA 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원산지규칙이 적용됨
- 한편, 양자간 누적은 오로지 역내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임

- 즉, 양자간 누적에서 원산지 함유량은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산지 함유량[포함비율](originating content)을 포함하고 있는 비원산지 부품이나 재료의 경우를 다루지[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때로는 “부분”(partial) 누적이라 불리기도 함.
- 그러므로 제작이나 마무리 또는 조립이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나 추가적인 구성부품에 부가가치 창출 할 수 있으나 당해 제품이 원산지를 부여받는데 충분하지 않음¹¹⁾

2) 완전 누적(full cumulation)

- 완전누적의 경우 FTA에 의해 창설된 특혜지역(FTA 당사국) 전부가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데 요구되는 일체의 작업이나 공정이 FTA 권역 내에서 수행되면 권역 외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를 포함하더라도 역내산 원산지를 부여하여 당해 협정상 특혜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게 됨¹²⁾
- FTA 역내에서의 제품의 공정이나 변형의 등의 모든 단계는, 그 공정이나 변형이 투입된 부품이나 재료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데 충분한 것인지를 볼

11) Ticon Development Consulting, p.35.

12) WT/REG/W/45, pp.5-6; <http://www.roughgate.com/free-trade/cumulation-of-origin/>

문하고, 원산지 상품의 제조에 있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정 (qualifying operation)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함¹³⁾

- 가령, A국, B국 및 C국 등 복수국간에 체결된 FTA에서 완전누적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 A국 생산자가 B국이나 C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특혜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B국이나 C국에서 생산된 재료가 모두 A국산의 지위를 부여받게 됨을 의미함

○ 완전 누적은 원산지 요건이 전체로서 FTA 역내에서 제조공정의 모든 단계가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된다는 점에서 비원산지 수입품(non-originating imports)이 원산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타방 당사국(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함.¹⁴⁾

- FTA 당사국(들)에서의 제조공정의 모든 단계가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됨
- 이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양자간 누적이나 아래에서 설명할 유사누적의 경우 공정과정의 고려 없이 원산지 상품만이 타방 당사국 원산지의 투입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요구되는 것과 다름.

○ 이러한 완전 누적은 일반적으로 3개국 이상이 체결하는 복수국간 FTA에 있어 이용되지만 드물게 양자간 FTA에서 이를 도입하여 규정하기도 함

- 또한 이들 FTA에서는 공통의 원산지규칙(rules of origin)을 갖고 있고 이들 FTA 당사국들 간의 모든 무역은 단일의 FTA 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원산지규칙이 적용됨.

3) 유사 누적(diagonal cumulation)

13)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_media/WCO/Public/Globa/1/PDF/Topics/Origin/Instruments%20and%20Tools/Comparative%20Study/Related%20Documents/Start-cat%20e.ashx

14) Ticon Development Consulting, p.36.

- 유사누적 규정에 따르면 당해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일정한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내산”[원산지]으로 간주하는 것을 허용
 - 이러한 유사누적규정은 누적규정이 포함된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들 간에 별도의 협정을 통해 규정하게 됨.¹⁵⁾
 - 이와 같이 유사누적은 지역그룹이나 특혜무역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하의 회원국들 간의 누적을 가리키는 점에서 “지역누적”(regional cumulation)이라 부르기도 함.
- 유사누적 규정은 다른 FTA 당사국들 간의 무역(inter-FTA trade)에 적용되는 것이란 점에서 FTA 당사국들 간의 역내 무역(intra-FTA trade)에 대해 적용되는 양자간 누적이나 완전 누적이와 차이가 있음.
- 또한 유사누적 규정은 (i)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FTA와 같은 특혜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이들 3개국 이상의 국가들 간에 적용되며, (ii) 양자간 누적이나 완전누적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참여 FTA가 동일한 원산지규칙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iii) 원칙적으로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양자간 누적이와 유사¹⁶⁾

(4) 주요 FTA에서의 누적규정 형태별 규정 유형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 그간 타결된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에서의 누적규정 형태별 규정 유형 현황을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Ⅲ-1> 와 같음

15) OECD, p.168.

16) Ticon Development Consulting, p.36.

〈표 Ⅲ-1〉 우리나라 및 주요 FTA에서의 누적규정 형태별 규정 유형 현황

누적규정 형태별 규정 유형		해당 주요 FTA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양자누적만 규정하는 유형		ASEAN-호주-뉴질랜드, ASEAN-중국, ASEAN-인도, ASEAN-일본, 호주-칠레, 칠레-중국, 칠레-인도, 칠레-일본, 중국-싱가포르, 도미니카-Central America-미국, EFTA-칠레, EFTA-멕시코, EFTA-SACU ¹⁷⁾ , EFTA-싱가포르, EU-칠레, EU-Mexico, 인도-싱가포르, 일본-인도, 일본-말레이시아, 일본-스위스, MERCOSUR-칠레, MERCOSUR-인도, MERCOSUR-멕시코,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미국-호주	한-ASEAN, 한-EFTA, 한-인도, 한-EU, 한-터키, 한-베트남, 한-중국 ¹⁸⁾
완전누적만 규정하는 유형		NAFTA ¹⁹⁾ , 캐나다-칠레, 칠레-멕시코, 일본-멕시코, 일본-싱가포르 ²⁰⁾	-
유사누적만 규정하는 유형		EU-스위스	-
혼합 규정 유형	양자+완전	캐나다-페루	한-칠레 ²¹⁾ , 한-싱가포르, 한-페루, 한-미국, 한-호주 ²²⁾ , 한-캐나다 ²³⁾ , 한-뉴질랜드 ²⁴⁾ , 한-콜롬비아 ²⁵⁾
	완전+유사	EU-CARIFORUM ²⁶⁾	-
	양자+완전+유사	EU-알제리, EU-남아공	-
누적규정 없는 유형		싱가포르-호주, 범아랍자유무역지역	-

17) SACU는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을 가리킴.

18) 한중FTA 3.6조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19) NAFTA 제404조:Accumulation

1.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shall, at the choic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be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provided that:

(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 an applicabl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set out in Annex 401, and the good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and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출처: WCO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보완 작성

○ 그간 타결된 주요 FTA에서의 누적규정 형태별 규정 유형 현황에서 드러난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1. 싱가포르-호주 FTA 등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결 된 FTA의 절대 다수에서 누적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역내 참여국들 간에 있어 부품이나 재료 또는 공정 단계에 있어 아웃소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관심(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됨
2. 누적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FTA의 다수는 양자간 누적규정만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그간 체결된 FTA의 다수가 양자간 FTA이었다는 사실과 양자간 누적규정 자체가 원칙적으로 양자간 FTA에서 적용되는 누적규정 형태라는 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
3. 완전누적만을 규정하는 FTA가 일부 있는데, 이들 FTA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국들은 캐나다, 칠레, 멕시코 및 미국 등 미주 지역 국가들이라는 점이 주목

-
2. For purposes of Article 402(10), the production of a producer that chooses to accumulate its production with that of other produc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production of a single producer.
 - 20) 일본-싱가폴 FTA 제24조(Accumulation)
 1.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either Party shall consider the production in its territory as tha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here such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of one or both Parties.
 2. The production of a Party includes the production at different stages undertaken by one or more producers located in its territory.
 - 21) 한-칠레 FTA Article 4.5: Accumulation
 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at a good is originating, the producer of a good may accumulate one's production with the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of materials incorporated in the good, so that the production of those materials is considered as done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complies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Article 4.2
 - 22) 한-호주FTA 3.5조.
 - 23) 한-캐나다FTA 3.7조.
 - 24) 한-뉴질랜드 FTA 3.6조.
 - 25) 한-콜롬비아FTA 3.7조.
 - 26) 이는 The Caribbean Forum (CARIFORUM)을 가리키며,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의 하부 구성 그룹임.

- 양자간 누적에 비해 완전 누적이 역내 생산자들로 하여금 당해 협정상 특혜원산지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채 비원산지 재료나 상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는 점에서 역내에 있어 아웃소싱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위한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FTA에서의 유사누적 규정의 이용은 전적으로 EU가 체결하는 FTA에서 발견되는 바, (i) EU-스위스 FTA에서는 양자간 누적만 규정하고, (ii) EU-CARIFORUM에서는 완전누적과 유사누적만을 규정하며, (iii) EU-알제리, EU-남아공 FTA에서는 양자간 누적, 완전 누적 및 유사누적을 모두 규정하는 등 협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누적규정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EU가 EFTA 및 터키가 참여하는 범유럽누적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지중해 연안 국가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 승인된 Euro-Med 원산지의정서(Origin protocol)에서 유사누적이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
 - 이와 관련 PANEURO FTA에서는 원산지의 누적규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양자간 누적 및 유사누적을 규정하고 특히 EEA 국가와의 협정에서는 완전누적까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범유럽원산지누적제도(pan-European system of cumulation of origin)를 확립하고 있음
 - 또한 유럽의 원산지누적제도는 일단 어느 제품이 “유럽원산지”(European origin)를 부여받게 되면 다시는 원산지를 검증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통관절차가 간소화되었고, 투입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설비를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많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어 생산자 및 무역업자 모두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함.²⁷⁾
5. 일부 FTA에서는 양자 누적, 완전 누적 및 유사 누적 규정을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i) 양자 누적과 완전 누적을 규정하는 유형(캐나다-페루 FTA 등), (ii) 완전 누적과 유사 누적을 규정하는 유형(EU-CARIFORUM),

27) WT/REG/W/45, p.18.

(iii) 양자 누적, 완전 누적 및 유사 누적을 모두 규정하는 유형(EU-알제리 및 EU-남아공 FTA 등)으로 구별됨

- 여기서 완전누적만 규정하여도 양자간 누적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간누적과 완전누적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 단순히 완전누적만을 규정하는 유형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짐

○ 한편 한국의 기타결 15건 FTA에서의 누적규정의 형태별 규정 유형을 살펴보면, (i) 한-ASEAN, 한-EFTA, 한-인도, 한-EU, 한-터키, 한-베트남, 한-중국 FTA 등 7건의 FTA에서는 양자간 누적규정만을 도입 규정하였고, (ii)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한-미국,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등 8건의 FTA에서는 양자간 누적과 완전 누적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한-ASEAN, 한-EFTA, 한-인도, 한-EU, 한-터키, 한-베트남, 한-중국 FTA 등 7건의 기타결 FTA에서 양자간 누적만을 규정한 것은 우리 기업의 GVC 활용 관점에서 아쉬움 존재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자간 누적규정과 비교하여 완전누적 규정은 역내 생산자들로 하여금 최종 제품의 생산에 있어 비원산지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허용하는 점에서 역내 생산자의 누적규정을 이용한 GVC 활용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점에서 역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누적조항

- 더욱이, 인건비 등 생산요소 비용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베트남, ASEAN, 중국과의 FTA에서 양자간 누적만을 규정한 것은 우리 기업이 부품이나 원료의 조달, 조립이나 가공 등 생산단계 등 GVC 관점에서 이들 국가의 활용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음

2. GVC관점에서 FTA누적규정의 복수국가간 메가 FTA 시사점

○ 본 연구에서 GVC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메가 FTA 중에서도 누적원칙상 완전누적을 고려한 복수국가간 메가 FTA만을 고려함

- 현재 타결된 유일한 복수국간 메가 FTA는 TPP협정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TPP를 중심으로 시사점 도출
 - 예를 들어 한-ASEAN FTA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복수국간 FTA는 해당하지만, 메가 FTA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 TPP의 경우 권역 내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이 참가하고 이러한 거대 소비시장으로의 접근을 위해 베트남 등의 생산기지를 이용한 권역 내 생산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TPP의 경우 완전누적을 포함하여 규정하였고, 더욱이 그 적용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역내 회원들 간에 완전 누적의 활용 기회가 그만큼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²⁸⁾
 - 협정상 특혜대우를 받고 역내의 다른 당사국들에 수출함에 있어, TPP의 경우 12개 당사국으로부터의 부품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로 FTA 특혜대우를 손상받지 않은 채 표현 그대로 GVC를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임
 - 이와 관련 양자간 누적의 경우 당해 FTA 당사국의 어느 생산자는 그 재료를 해외에서 구매함에 있어 오직 1개의 타방 당사국산 원산지의 상품에 한하여 특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TPP의 경우 요건이 완화된 완전 누적을 포함하고 있어 TPP 당사국의 생산자는 비원산지 재료나 부품에 대해 완전누적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어 양자간 누적에 비해 그만큼 GVC 활용이 유리하게 됨
 - TPP의 경우 NAFTA에 비하여 완화된 완전 누적을 규정하고 있음. <별첨. 1> 참고
 - 이는 완전 누적규정에 따르면 완제품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 중 역내에

28) TPP 완전누적 규정의 경우 NAFTA 완전누적 규정에서의 일부 추가 단서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특혜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커짐. 별첨 1. 참조

서 부가된 가치부분만큼은 완제품의 역내가치포함(RVC) 계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는 관계로 그만큼 특혜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

- 하지만, TPP를 포함한 복수국간 메가 FTA에서 완전누적 규정을 도입한 경우라 할지라도 GVC 활용과 관련하여 당해 FTA 원산지규정의 다른 관련 기준과 특히 자동차, 섬유 및 의류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에서의 원산지 요건을 적용받게 됨을 반드시 유의해야 함
 - 가령, NAFTA 원산지규칙상 누적조항에서는 완전누적에 대해서만 규정하지만, 이밖에 중간재에 적용되는 roll up원칙[흡수원칙]을 규정하고, 불인정 공정 리스트를 두고 있음
 - 예를 들어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도 yarn-forward와 같은 3중 변형 등 매우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요구하여, 비역내산 재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음
 - 이밖에 NAFTA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순비용방법을 사용하는 자동차부품의 경우 62.5% 이상, 자동차의 경우 60% 이상의 지역가치함량(RVC)을 요구하는데 이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10% 이상 높은 지역가치함량을 요구한 것으로서 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GVC 관점에서 TPP 등 복수국간 메가 FTA의 누적조항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누적조항 이외에 관련 원산지기준과 특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규칙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원산지요건이 없는 경우 메가 FTA를 포함한 다수의 양자간 FTA와 TPP와 같은 복수국간 메가 FTA와의 활용에서 차이가 없음
 - 한국산 중간재를 활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할 경우 최종 수출로 미국에서 관세면제 혜택 가능
- 반면 Yarn Forward의 예처럼 엄격한 원산지결정을 요구할 경우 TPP 미 참여로 인한 관세면제 혜택 얻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비관세 혜택을 위한 역내지

역으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gence) 혹은 다국적 기업의 역내지역으로의 이전 발생

- 예를 들어 Yarn Forward가 적용될 경우 한-베트남 및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원사의 경우 베트남의 봉제기업에 활용될 경우 관세혜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발생
- 하지만 이러한 관세혜택 또한 세부 상품단위 별로 차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4. 소결론

- 경제적 의미의 ‘메가 FTA’의 경우 단순히 복수국가가 참여하는 협상이 아닌 미국, EU, 일본, 중국의 거대경제권 중 두 개의 국가 이상이 참여하는 FTA로 이해해야 함
 - Big4의 참여가 있을 경우에 메가 FTA로 인하여 FTA 권역 내 거대 소비시장 형성 가능
 - GVC상의 최종판매처로서의 역할 충족
- GVC은 다수의 국가 간에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복수국 간의 메가FTA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원산지 규정과 누적 조항이 GVC를 통한 수출 및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타결된 유일한 복수국간의 메가 FTA인 TPP의 경우 완전누적규정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권역 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비원산지 제품을 활용할 여지를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
- 하지만, TPP를 포함한 완전누적 규정을 도입한 복수국간 메가 FTA에서도 당해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 기준, 예를 들어 자동차, 섬유 및 의류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에서의 원산지 요건을 적용받게 됨

을 반드시 유의해야 함

- 그러므로 상품 혹은 품목별로 활용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기업측면에서는 Big4 국가들의 참여로 최종판매처로서의 수요가 충족되고 권역 내의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메가 FTA 권역내의 생산기지를 통한 생산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IV. 한국기업의 GVC 참여현황 및 시사점: TPP 참여국을 중심으로

○ IV장에서는 II장에서 논의한 GVC의 이론적 함의와 III장에서 논의한 통상 규범 상의 복수간 메가FTA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GVC 참여현황과 시사점을 도출

○ 특히 앞에서 논의한 GVC상의 메가 FTA로 인한 변화를 실증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TPP 참여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및 다국적 기업의 진출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 TPP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대로 Big4 중 미국과 일본이 참여
-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또한 다수 포함
- 이러한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과 최종소비시장으로 미국과 일본 및 기타 선진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좋은 예시

○ TPP 케이스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메가 FTA의 GVC에 대한 영향과 한국기업의 GVC 참여에 대한 시사점 도출

1. 한국의 대 TPP참여국의 수출 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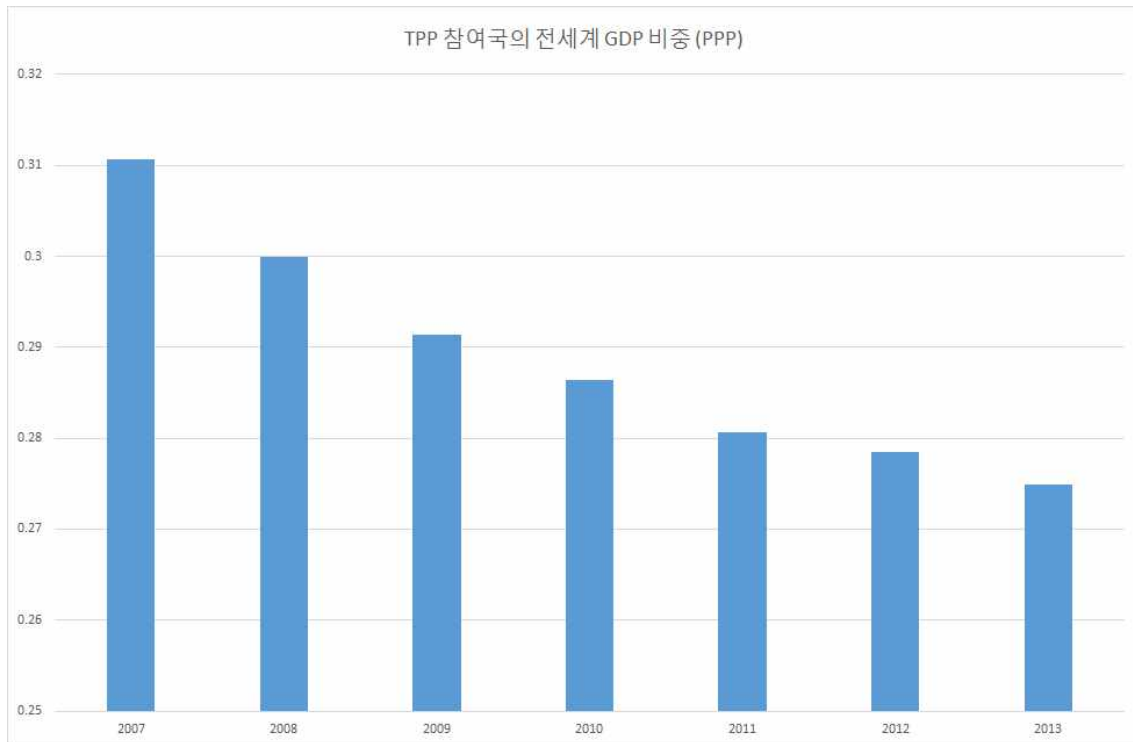
○ TPP 참여국의 전 세계 차지하는 경제규모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 세계 규모의 1/4 이상을 차지

- 실질구매력(PPP) GDP 기준으로 2013년 전 세계 경제의 27.5% 차지

- 〈그림 IV-1〉 참조

- 특히 세계거대 경제권 중 하나인 미국과 일본의 최종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절대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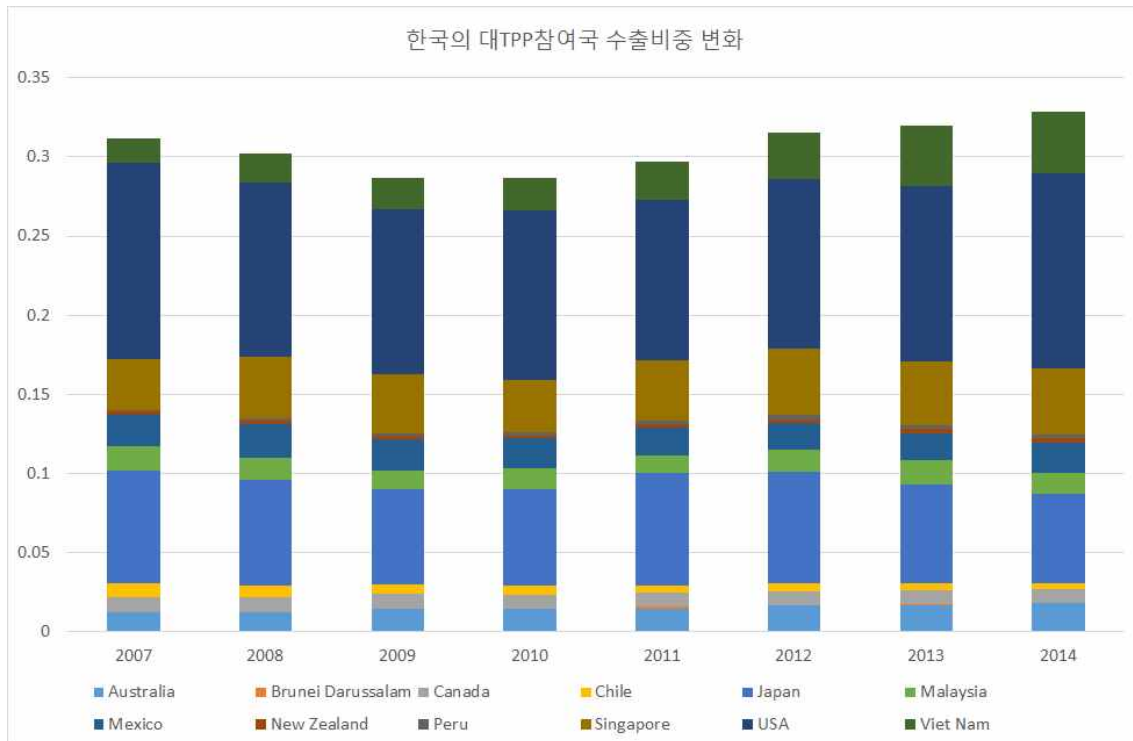
〈그림 IV-1〉 TPP 참여국의 전 세계 GDP 비중 변화



출처: WDI

- TPP 참여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대비 축소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시장으로의 중요성은 최근 점차 증대되는 추세
 - 2009년 Great Recession 이후 한국의 대 TPP참여국의 수출비중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 한국의 전 세계 수출 비중의 32.9% 수준에 이름
 - 이러한 수출 증가는 대 일본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인 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의 수출 비중의 증가에 기여
 -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07년 한국 수출비중의 1.9%에서 2014년 3.9%로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

〈그림 IV-2〉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수출비중 변화



출처: UN COMTRADE

- 한국의 최근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중간재 (Intermediates)의 수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 2009년 Great Recession 이후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전체 무역비중의 53%를 상회

〈표 IV-1〉 한국의 최근 수출 구조

	Capital Goods	Intermediates	Consumption Goods	Others
2007	25.4%	48.4%	4.4%	21.8%
2008	26.5%	45.9%	3.9%	23.7%
2009	28.9%	45.1%	4.2%	21.7%
2010	26.5%	48.4%	4.0%	21.1%
2011	24.9%	48.2%	3.7%	23.2%
2012	22.7%	49.9%	3.8%	23.6%
2013	22.0%	52.0%	3.9%	22.0%
2014	22.0%	53.1%	4.0%	20.8%

출처: UN Comtrade

- TPP 참여국과의 수출 구조에서는 최근 자본재와 중간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그림 IV-3〉, 〈그림 IV-4〉, 〈그림 IV-5〉 참조²⁹⁾
- 특히 GVC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간재 수출의 경우, 베트남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 베트남의 경우 중간재 이외에도 자본재와 소비재 등 전반적인 전 세계 수출에 대한 대베트남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중간재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여전히 미국,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등 TPP권역내 주요 선진국들의 비중이 높고, 이러한 부분에 한국의 해외진출 기업의 기업내무역(Intra-Firm Trade)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등 해당지역의 한국해외진출 자회사들의 한국의 본사 혹은 한국 내 기업을 통한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V-2〉 참조
- 반면 아세안 개발도상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기업내무역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작은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의 본사 혹은 한국 내 기업에서의 구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V-2〉 참조

29) BEC Code를 이용하여, 자본재, 중간재 그리고 소비재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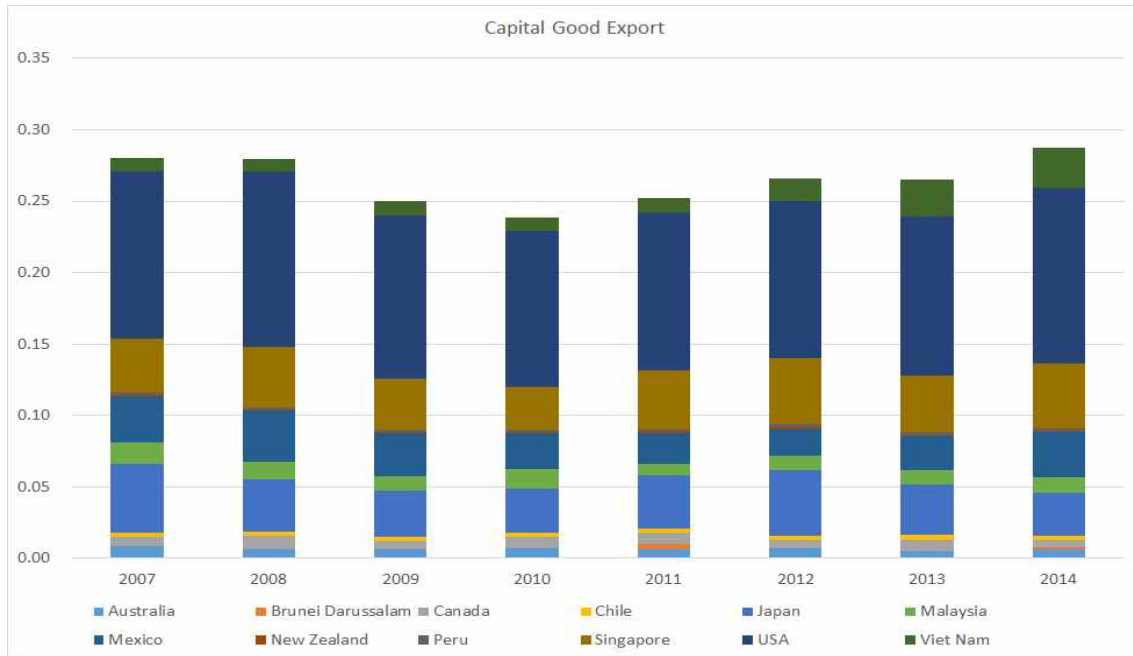
〈표 IV-2〉 한국의 해외진출 자회사의 한국 내 기업을 통한 구입비중

	모기업에서의 구입비중	한국 내 기업에서의 구입비중 (모기업포함)
칠레	47.3%	47.3%
오스트레일리아	36.7%	37.2%
일본	31.7%	32.7%
미국	31.3%	36.3%
싱가포르	30.6%	36.3%
멕시코	28.8%	34.3%
뉴질랜드	27.2%	28.7%
베트남	25.8%	31.1%
캐나다	24.0%	25.1%
페루	21.0%	21.0%
말레이시아	19.2%	30.3%
기타	25.9%	30.2%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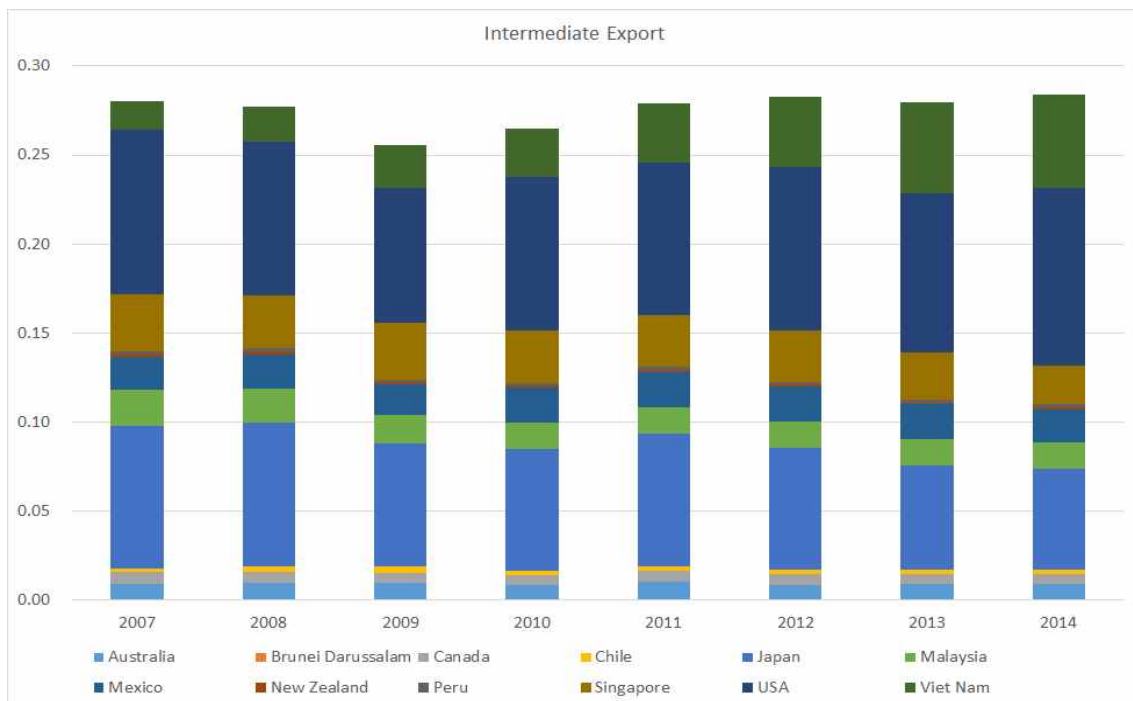
-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GVC상의 최종소비시장으로 고려되는 미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 2009년 Great Recession 기간 동안 한국의 대미국 중간재 수출은 전 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의 7.6%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14년 10.1%로 상승
 - 이는 Great Recession 이전의 8~9% 수준을 상회

〈그림 IV-3〉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자본재 수출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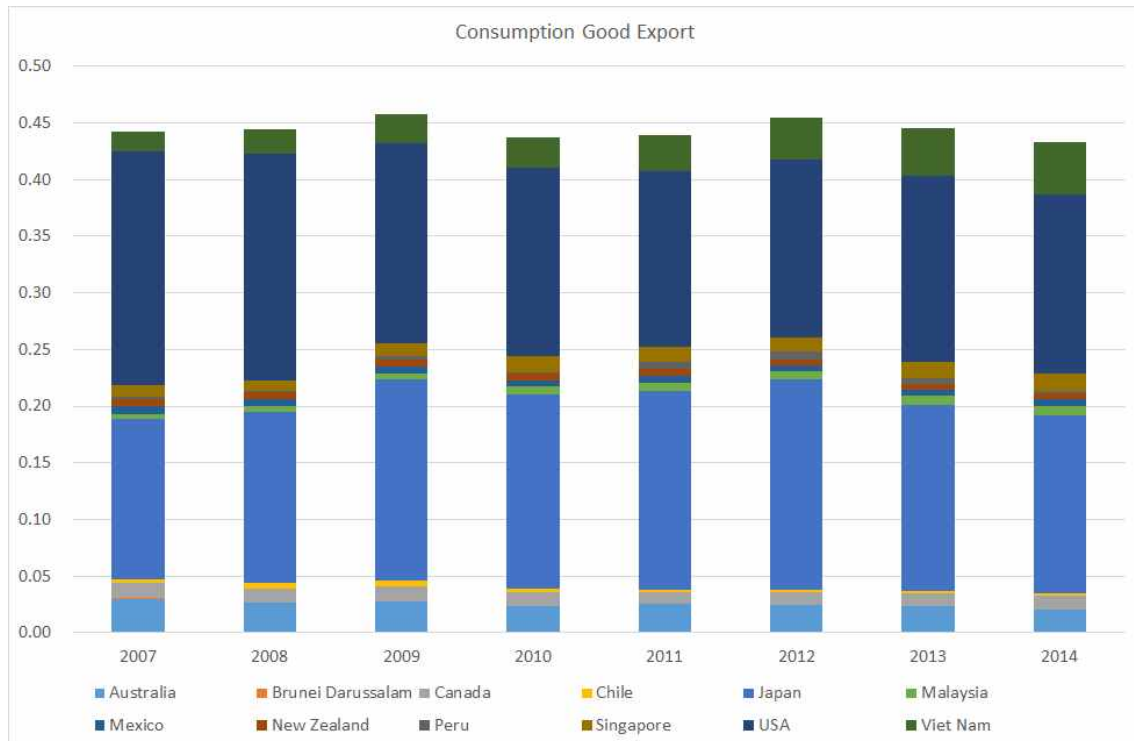
출처: UN Comtrade

〈그림 IV-4〉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중간재 수출비중 변화



출처: UN Comtrade

〈그림 IV-5〉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소비재 수출비중 변화



출처: UN Comtrade

○ 요약하면 한국의 대 TPP 참여국의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GVC와 가장 연관이 깊은 중간재의 수출 비중 또한 점차 증가

○ 특히, 이러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일반적으로 조립가공을 수행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외에도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의 선진국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개발도상국 중 베트남 그리고 선진국에서 미국의 중간재 수출의 증가가 두드러짐

2. 한국의 대 TPP참여국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 앞에서 분석한 대 TPP참여국의 중간재 수출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위하여 TPP참여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도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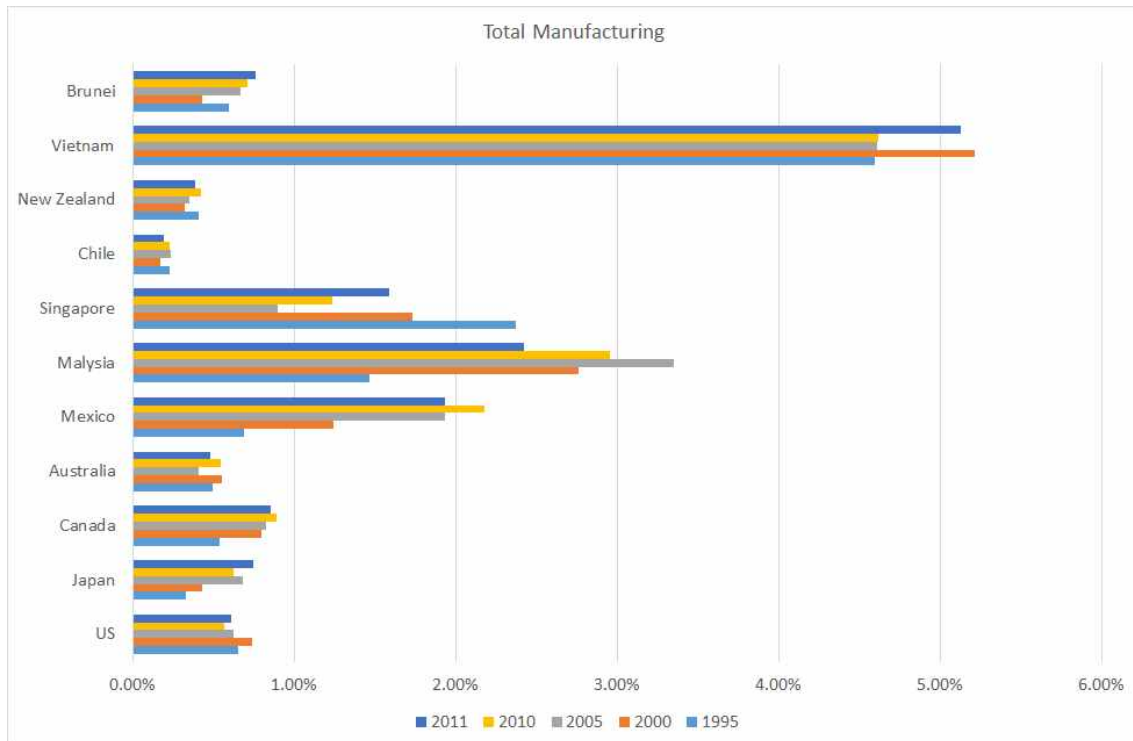
-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기여도를 통하여 중간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 가능

- 예를 들어 중간재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도가 낮을 경우 중간재가 주로 국내에서 조립되어 국내에서 소비되었을 가능성 큼
- 전체 제조업의 경우 한국의 수출로 인한 각국의 부가가치 기여도의 경우 대체로 아세안의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아세안 개발도상국의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북미의 멕시코에서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음
 - 선진국의 경우 싱가포르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중계가공무역이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낮다고 평가됨
- 이는 상대적으로 위의 국가들에게 높은 수준의 중간재 수출 비중을 보였고 동시에 이들 나라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주로 추가 공정을 통한 가공수출을 위한 중간재로 활용됨을 추측할 수 있음
- 반면 높은 중간재의 수출 비중을 보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들 국가의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는 비중은 낮은 편
 - 주로 중간재가 추가 공정을 통하여 해당 국가 내의 최종재로 활용됨을 추측할 수 있음
 - 물론 이들 국가의 경제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생산품의 수출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가능성 존재
- 제조업 내 각 산업에서도 한국의 TPP 참여국의 수출 부가가치기여는 차이를 보임
 - 전반적으로 섬유산업, 화학산업, 금속산업, 수송산업 그리고 전자산업 등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음
 - 〈별첨 2〉에 개별 산업별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 그래프 참조

- 국가별로도 산업간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도는 차이를 보임
- 〈그림 IV-6〉 참조

〈그림 IV-6〉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수출의 부가가치기여 변화(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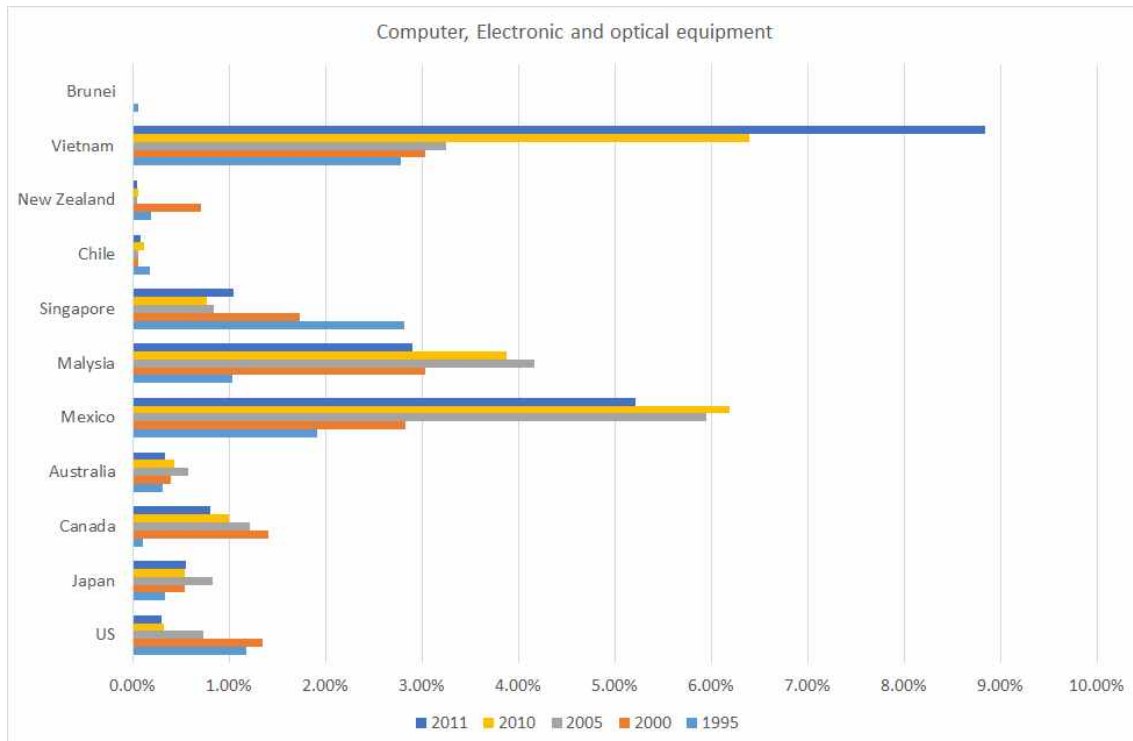


출처: OECD TiVA

○ 제조업 중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에서의 각국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베트남의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에 대한 한국생산의 부가가치기여도가 최근 8.7%에 이름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에서도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 기여도를 보임
- 〈그림 IV-7〉 참조

〈그림 IV-7〉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수출의 부가가치기여 변화(전자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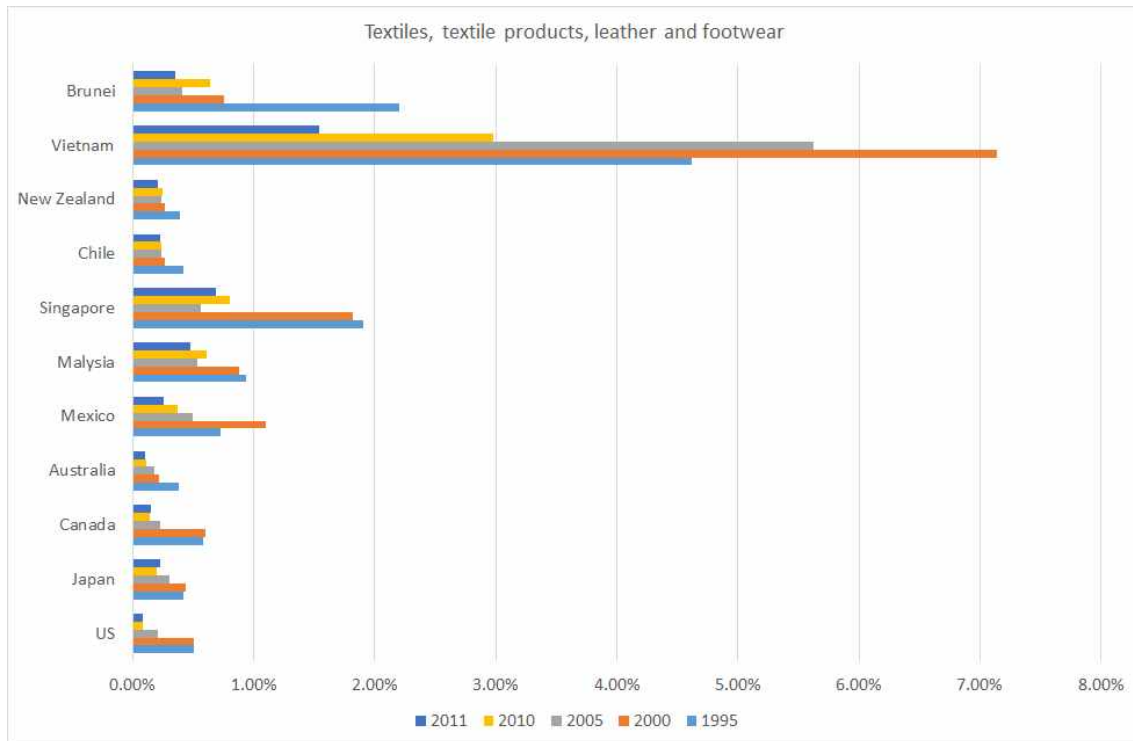


출처: OECD TiVA

○ 섬유산업의 경우 TPP 참여국 전반적으로 한국의 생산이 수출의 부가가치기여에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 이는 국내 섬유산업의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내 생산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최근 들어 베트남의 경우 섬유산업 수출에서 한국 생산이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그림 IV-8〉 참조

〈그림 IV-8〉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수출의 부가가치기여 변화(섬유산업)



출처: OECD Ti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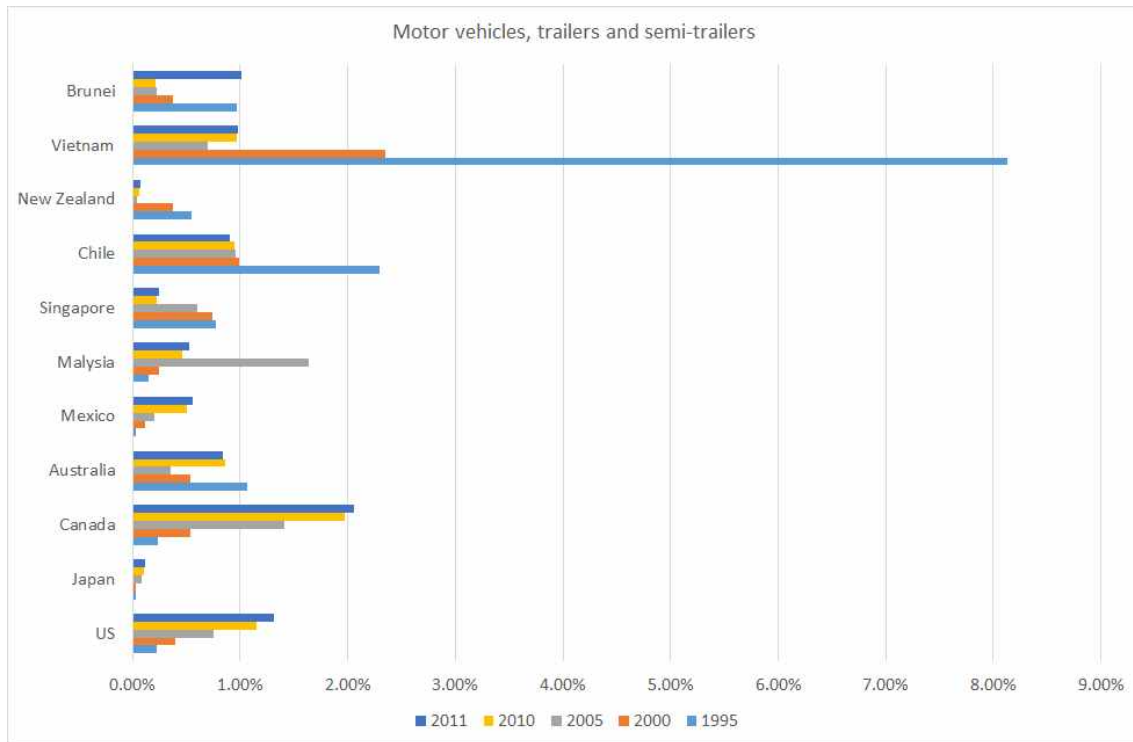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이용한 Export-Platform 형태의 수출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Export-Platform 형태의 수출의 경우 자동차의 중간재를 한국에서 생산하여 멕시코로 이전하여 조립 가공 후 미국의 시장으로 수출
- 이 경우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 한국 생산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아야하나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그렇지 않음을 확인
- 이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이전으로 인하여 기타 중간재 공급기업도 동반 이전에 일부 기여되었다고 판단
- 또한 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증가
- 두 현상 모두 앞 장에서 논의한 NAFTA의 자동차부품의 경우 62.5% 이상, 자동차의 경우 60% 이상의 지역가치함량(RVC)을 요구하는 누적조항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그림 IV-9〉 참조

〈그림 IV-9〉 한국의 대 TPP 참여국 수출의 부가가치기여 변화(자동차산업)



출처: OECD TiVA

3. TPP로 인한 수출변화 예측

- TPP 참여 국가와의 수출입 분석을 통하여 TPP타결 이후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예측 및 함의 도출
- 앞에서 분석한 TPP 참여국과의 한국의 수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한국의 경우 GVC와 가장 관련이 깊은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고 TPP 참여국이 한국의 전체 중간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음
 2. TPP 참여국 중 거대경제권 중 하나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의 중간재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이 아닌 국내에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들 국가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중간재 비중은 낮음
- 3. 반면 개발도상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의 경우 한국의 중간재를 활용하여 가공수출 하는 것으로 보임
- 4. 전자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출의 부가가치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수출을 통한 GVC 참여도가 가장 높다고 보임
- 5. 일부 섬유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을 통한 각국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도가 낮거나 낮아진다는 점에서 국내 생산과 수출을 통한 GVC 참여는 낮다고 판단됨
- 반면 국내생산이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동으로 이전됨
-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TPP 타결로 인한 한국 수출의 변화를 예상해보면 아래와 같음
- 첫째로 한국의 TPP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미국으로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중간재 수출의 경우 미국 내 최종소비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음
- 이는 한미 FTA를 통한 관세혜택과 TPP 가입으로 인한 관세혜택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
- 동일한 논리로 TPP 참여서 일본과의 수출에서도 동일수준의 한-일의 양자간 FTA로서의 의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임
- 이러한 결론은 TPP가 기본적으로 양자간 FTA와의 개방수준의 차이는 없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결론임을 유의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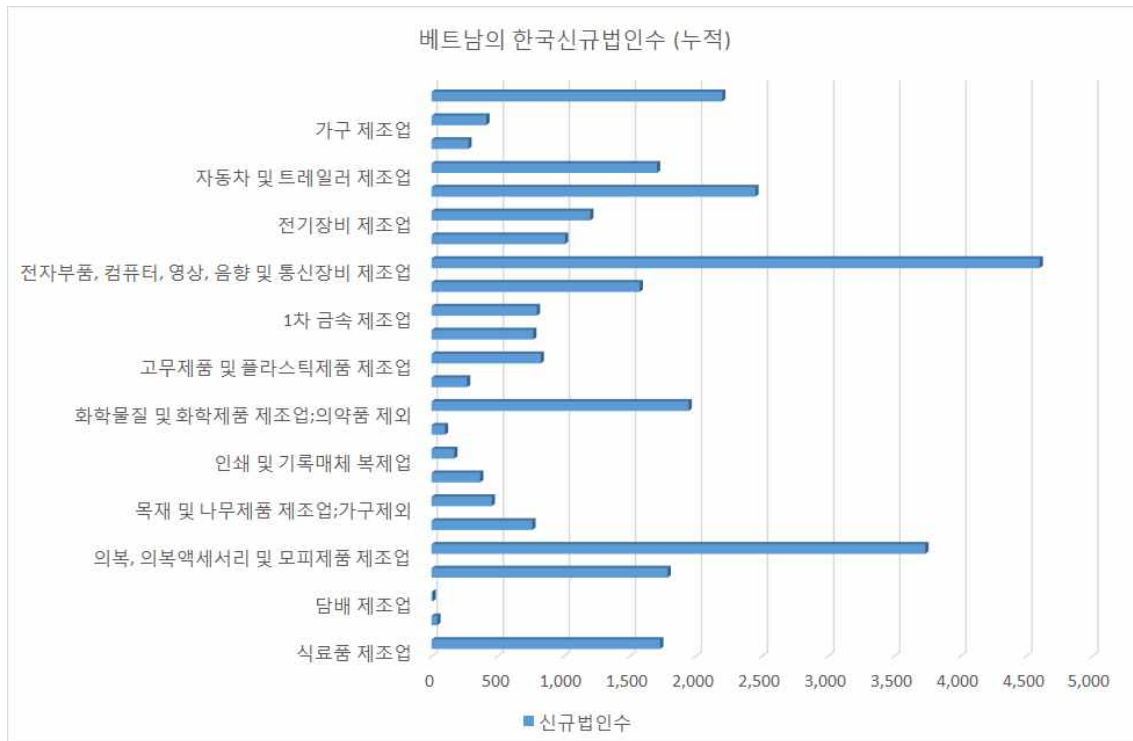
30) TPP와 한-미 FTA 간의 개별 상품별 개방 수준 정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증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TPP 가입으로 인한 수출 증진 효과를 일반화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됨
 - 우선 TPP의 경우 완전 누적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역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나, 역외 비원산지 상품의 경우도 해당국가에서의 공정을 통하여 미국, 일본 등의 최종시장에 관세혜택을 받을 여지가 큼
 - 특히 한국 생산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가 큰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양자 FTA를 통하여 베트남 내 무관세로 들어가 가공될 경우 미국, 일본 등의 최종시장에서 베트남 역내 산으로 인정받을 여지 큼
 - 이러한 경우 앞에서 지적한 지역가치함량(RVC)이나 Yarn Forward 같은 불인정공정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 있음
- 하지만 불인정공정리스트로 인하여 한국의 중간재를 활용한 제품이 TPP 권역 내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기업들의 TPP 권역 내로의 해외진출 선택으로 인한 수출 감소의 위험성 존재함을 주의
 - 국내생산 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생산을 통한 수출의 공동화 현상을 촉진
 - NAFTA의 혜택을 위한 멕시코의 진출 기업의 경우나 섬유산업의 해외진출의 경우를 참고할 때 국내 생산시설의 이전은 TPP 미가입시 수출의 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전자산업과 같은 경우 1997년 WTO에 의해 체결된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TPP를 통한 관세 이슈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TPP 발효로 인한 국내 수출효과를 판단하는데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의 변화가 수출변화 및 GVC 참여를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함

4. 한국기업의 베트남 섬유산업과 TPP 영향 분석

-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TPP 발효로 인한 수출의 변화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이 중요한 요인
- 또한 GVC 측면에서도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GVC참여는 GVC활용에 있어서 기업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
- 그러므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메가 FTA시대의 한국 해외진출 기업의 GVC 참여에 대한 시사점과 전략 도출을 위한 분석
- 특히 제 2장에서 논의한 GVC의 이론적 분석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기업의 실제 GVC 참여 현황을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해당지역과 산업의 경우 베트남 지역의 섬유산업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정
 - 최근 중국에 이어 한국의 해외진출 법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 베트남 지역의 한국해외진출 법인 중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그림 IV-10〉 참조
 -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타결과 동시에 최근 주요 메가 FTA인 TPP 그리고 RCEP 등에 모두 포함된 국가
 - 베트남 내 섬유산업은 주요수출 품목임과 동시에 TPP의 경우 누적원산지 규정과 관련 Yarn Forward 같은 불인정공정리스트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전자산업의 경우 베트남의 투자비중이 높으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7년 WTO에 의해 체결된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FTA를 통한 관세 이슈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10〉 한국의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비중변화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1) 베트남의 섬유산업 현황 및 TPP로 인한 GVC 변화

○ 베트남 섬유산업의 경우 GVC를 활용한 가공무역의 대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인접 국가의 중간재 수입과 최종생산재를 주요 거대시장으로 판매

○ 특히 수출의 경우 미국, 일본 등이 가장 주요한 시장이며, 반대로 수입의 경우 중국 및 한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V-3〉 참조

〈표 IV-3〉 베트남 섬유산업 국가별 무역구조, 2013년

베트남 섬유산업 국가별 수출입 비중			
수출비중		수입비중	
미국	36.6%	중국	42.2%
일본	10.9%	한국	19.6%
한국	8.3%	대만	16.1%
중국	8.2%	일본	6.8%
독일	2.7%	태국	4.0%
수출총액	148억 불	수입총액	112억불

참조: Comtrade. 섬유산업의 정의는 MTI code 참조

- 주요 수출국의 경우 최종재인 섬유제품의 수출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입국의 경우 섬유사와 직물 등의 중간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V-4〉 참조

〈표 IV-4〉 베트남 섬유산업 국가별 품목별 무역구조, 2013년

수출				
국가	섬유원료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
미국	0.2%	0.4%	3.9%	95.5%
일본	0.0%	2.2%	2.2%	95.5%
한국	0.0%	18.2%	11.3%	70.5%
중국	0.1%	74.6%	5.4%	19.9%
독일	0.3%	1.7%	0.7%	97.3%
전세계	0.7%	13.8%	7.8%	77.7%
수입				
중국	1.8%	9.5%	84.9%	3.8%
한국	4.0%	8.0%	82.0%	6.0%
대만	11.3%	13.6%	72.2%	2.9%
일본	2.7%	6.3%	75.9%	15.1%
태국	25.4%	7.2%	58.2%	9.2%
전세계	4.8%	10.6%	78.4%	6.2%

- 베트남 섬유산업에서 직물의 비중이 전체 수입의 78%로 높은 수준
- 특히 중국의 섬유사와 직물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TPP의 체결로 인한 누적 원산지규정이 중요성이 증대
 - 중국으로 부터의 직물의 경우 베트남 섬유산업 관련 수입의 36% 수준
- 앞 장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누적원산지규정으로 인하여 중국의 섬유사 및 직물 생산 기업의 TPP 권역내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예상됨
 - 기존 생산 네트워크인 중국을 통한 섬유사 혹은 직물은 TPP하의 원산지규정과 Yarn Forward라는 불인정공정리스트로 인하여 관세혜택에 제외 가능성
 - 관세혜택을 위하여 중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혹은 기타 TPP역내 경제권으로 이전 예상
- 현지 실태조사 결과 최근 베트남에 원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투자의 증가를 이미 확인할 수 있었음
 - 원료 수입을 통하여 베트남 혹은 TPP역내에서 원사를 생산하는 경우 관세혜택 가능
- 특히 베트남 섬유산업 전체에서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전체 수출에서 베트남의 국내 부가가치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한국, 중국, 대만 등의 수입품목에 의한 부가가치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베트남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급격히 증가
 - 1995년 베트남의 섬유산업의 수출의 자국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87%에서 2005년 77% 수준으로 감소
 - 하지만 최근 자국 부가가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여 95%에 육박
 - 〈그림 IV-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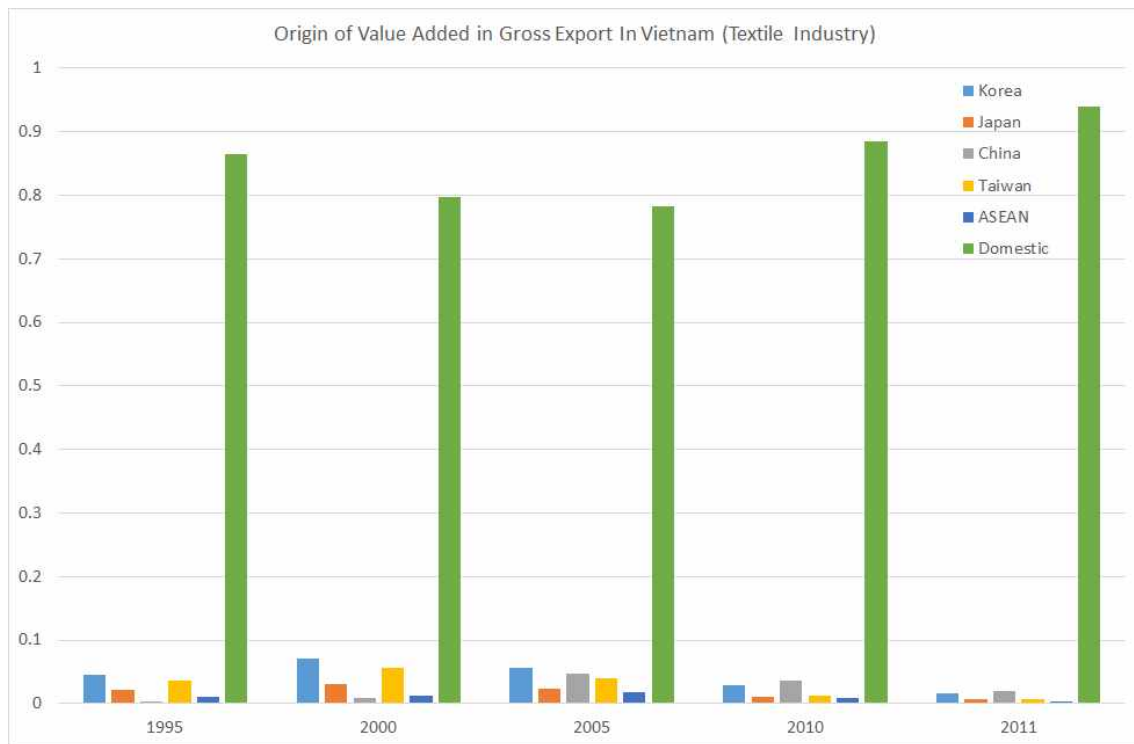
- 반면 전체 제조업의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감소

- 〈그림 IV-12〉 참조

○ 이는 베트남 섬유산업이 베트남 내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수행된다는 의미로, 이전에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 수출을 하던 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 공정을 이전한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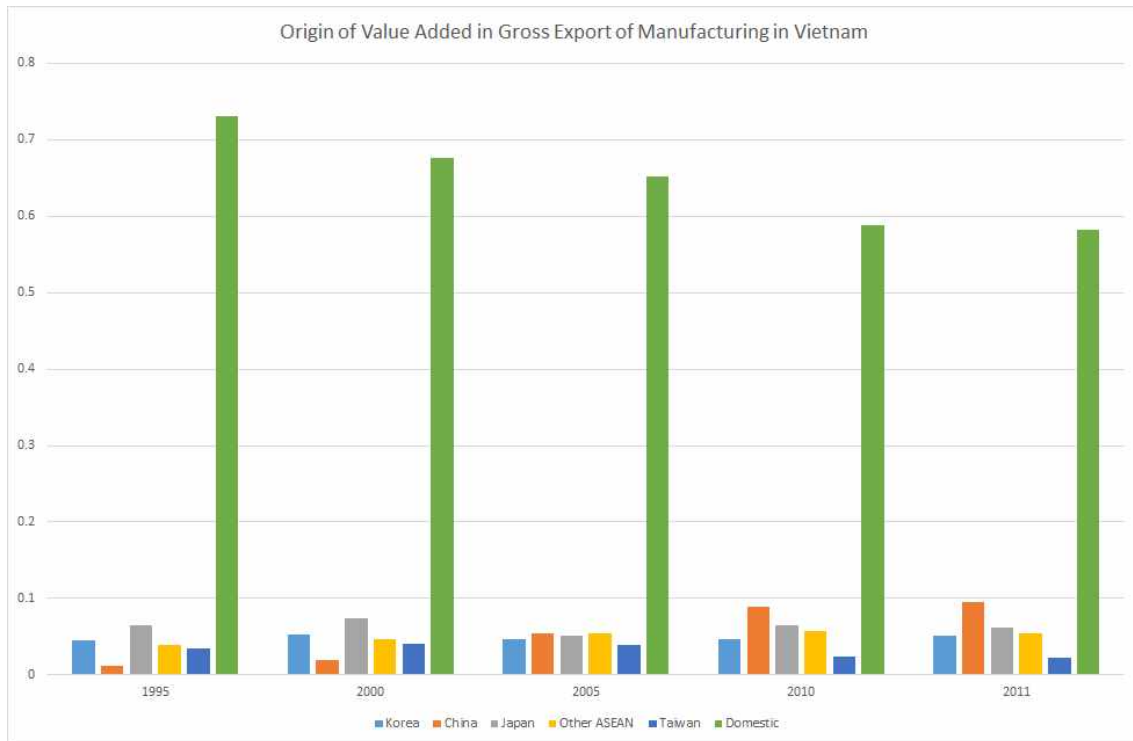
- 일부 VINATEX 등 국영기업을 통한 베트남 자국 생산의 업그레이드부분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

〈그림 IV-11〉 베트남 섬유산업 수출의 부가가치 기여비중



출처: OECD TiVA

〈그림 IV-12〉 베트남 제조업 수출의 부가가치 기여비중



출처: OECD Ti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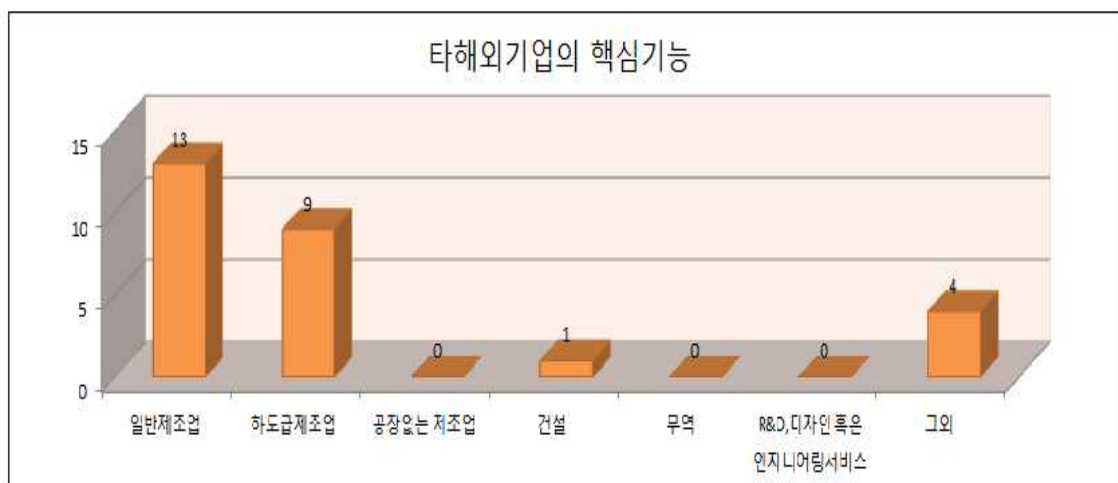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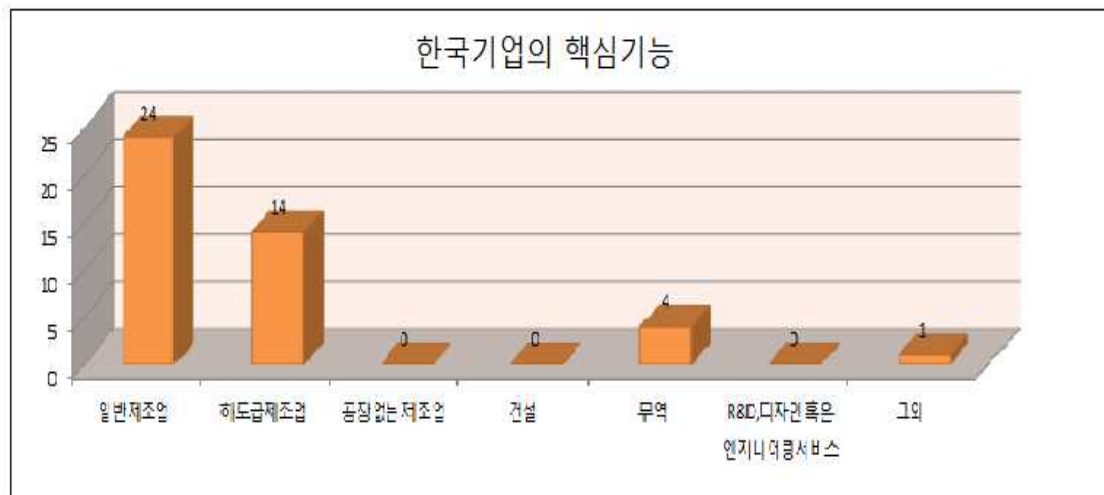
- 이러한 경우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 혹은 진출 고려 기업에게는 현지 투자 증가로 인하여 노동비용 및 기타 시설비용의 증가라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비용의 증가 속에서 현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앞장에서 논의한 대로 핵심경쟁력에 집중화와 기타 업무에 대한 위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
- 현지기업 실사 조사 결과, 현지 진출한 한 방직기업의 경우 최근 베트남 지역의 시설 투자 증가로 인한 노동 비용의 증가로 노후 설비시설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는 방직은 구조조정을 하며 경쟁력을 보유한 가공 부분에 집중화 등의 변화 관찰
 - 섬유제품 생산 공정에서 가공의 경우 시설투자 및 장기간의 노하우와 기술력 확보가 중시
 - 이는 앞에서 지적인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화와 집중화의 사례

- 이러한 집중화, 전문화 시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비경쟁력부분 혹은 기타지원기능의 아웃소싱이 중요

(2)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아웃소싱 실태조사

- 앞에서 살펴본 섬유산업의 예에서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GVC 활용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투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이 예상됨으로 기존의 기업 혹은 진출 계획 기업의 경우 경쟁력 확보가 관건
- 특히 앞장에서 GVC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핵심 분야에 집중을 하며, 기타 지원기능은 GVC를 활용하여 아웃소싱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함
- 그러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및 해외기업의 업종 형태 및 GVC내에서 분업화 현황을 파악하여 최근 확대되어 가는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서 국제산업협력 변화흐름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의 경우 KOTRA의 협조하에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진출한 한국 및 해외기업 6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그 중 한국기업은 43개사가 해외기업은 24개사가 설문에 참여
- 베트남의 조사대상 진출 기업은 주로 제조업과 하도급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IV-13>참조

〈그림 IV-13〉 베트남 조사기업의 핵심기능 분포



- 주요 고객 기업 위치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우 베트남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해외 기업의 경우 주로 베트남에서 생산 후 최종 판매처인 세계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기업의 경우 베트남(25개사), 한국(6개사), 미국(5개사)순으로 나타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외국기업들은 일본(13개사), 한국(12개사), 유럽(6사)으로 생산은 베트남에서 진행되나, 최종 판매는 세계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림 IV-14〉 참조

〈그림 IV-14〉 베트남 조사기업의 주요 고객기업 위치 분포



- 반면 중간재 공급처의 경우 한국기업 및 해외기업 모두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접한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생산 및 조립 후 유럽 등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GVC내의 전형적인 분업 형태를 보임
- 또한 앞에서 지적한 분업과 집중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의 경우 주로 물류 및 유통에 아웃소싱을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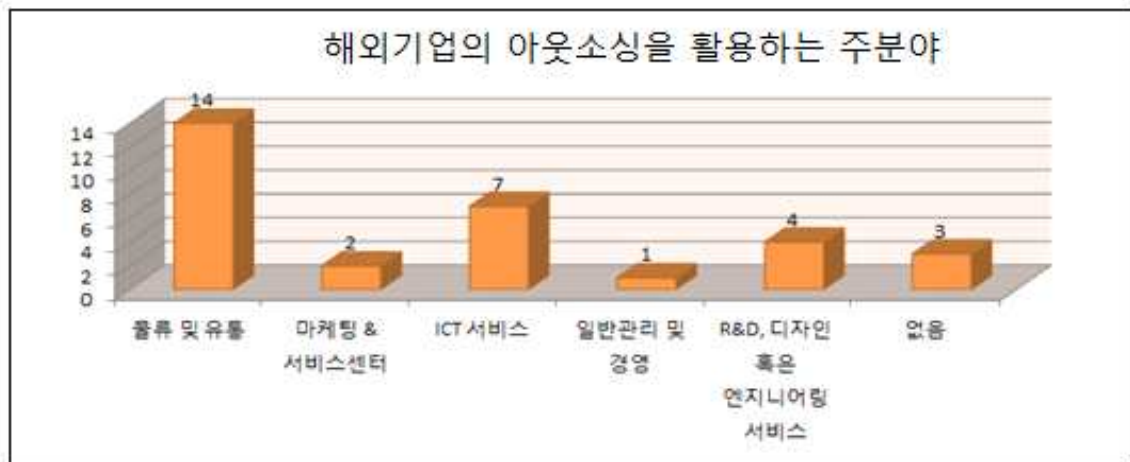
- 이는 판매의 핵심 활동에서 베트남 현지와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GVC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IV-15〉 베트남 조사기업의 주요 중간재 제공기업 위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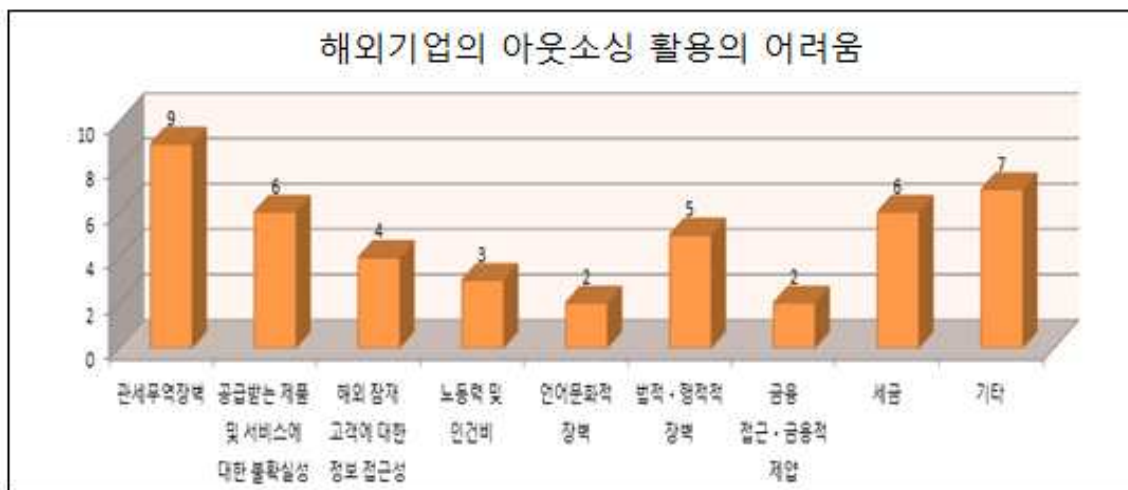
- 아웃소싱 활용분야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우 물류 및 유통에만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반면 해외기업의 경우 ICT 서비스 또는 R&D, 디자인 혹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아웃소싱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 기업의 경우 9개의 기업이 전혀 아웃소싱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이러한 이유로 필요 시 기업의 본사(Headquarter)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

〈그림 IV-16〉 베트남 조사기업의 아웃소싱 활용 분야



-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화와 집중화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기업의 경우 공급받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웃소싱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됨
- 반면 해외 기업의 경우 관세무역장벽이 아웃소싱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경우 한-ASEAN FTA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에 관세가 주는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한국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아웃소싱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됨

〈그림 IV-17〉 베트남 조사기업의 아웃소싱을 저해하는 요인



5. 소결론

- 12개의 TPP 참여국으로의 한국의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
- GVC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간재 수출의 경우 거대경제권 중 하나인 미국과 일본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인 개발도상국, 베트남 등에서 빠르게 증가

- 특히 거대경제권의 중간재 수출의 경우 현지 진출기업의 기업 내 무역이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TPP로 인한 한국의 대 TPP 참여국의 수출의 증가여부는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움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자간 FTA 이상의 의미를 얻기는 힘들다고 판단됨
- 미국의 경우 중간재 수출이 주로 국내에서 조립되어 이용된다는 점에서 양자간 한-미 FTA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
-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경우도 양자간 한-일본의 FTA로서의 의미가 강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TPP 참여국과의 양자간 FTA가 맺어진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불공정리스트에 따라 수입 감소 일어날 위험이 존재
- TPP에 완전누적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불공정리스트의 문제가 없을 경우 한-베트남 FTA를 활용한 베트남의 생산을 통해 TPP 권역내 시장에 비관세 혜택 가능
- 반면 Yarn Forward와 같은 불공정리스트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의 원사 생산시설이 TPP 권역내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 존재
- 베트남 내 섬유산업의 경우 현재 중국으로부터 원사를 수입하고 있으나 TPP로 인하여 중국의 원사생산 기업들의 베트남으로의 이전이 예상되며 이미 베트남 내 원사생산 시설 증가를 확인
- 이러한 원사생산 시설 증가는 베트남 내 현지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현지 진출 기업의 경우 비용증가의 압박으로 다가올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현지진출 섬유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지원 기능의 아웃소싱을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 필수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 물류 외의 지원기능의 아웃소싱활용이 해외기업에 비하여 부진
- 특히 적절한 아웃소싱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원 기능의 아웃소싱을 위한 해결과 지원이 필요

V. 메가FTA시대의 한국기업의 GVC 참여 확대전략 및 지원방안

- 해당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GVC와 메가FTA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메가FTA시대에 한국기업의 GVC 참여 확대전략과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함

1. 코트라의 무역관을 활용한 기타업무 아웃소싱 기업의 리스팅 및 지원

- 앞 장의 다양한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기업의 GVC 참여는 앞으로 국내 생산을 통한 수출보다는 해외진출을 통하여 확장될 것으로 판단됨
 - 해외진출 기업을 통한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측면에서 거대 경제를 포함한 복수국가 간의 메가 FTA는 TPP 권역 내 개발도상국의 한국 현지진출 기업 혹은 앞으로 진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TPP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참여로 인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소비시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장을 위한 참여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의 이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TPP 개발도상국 권역 내 생산을 목적으로한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해당 지역의 임금 등 기타 비용 증가가 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통상적 규범적 측면에서 TPP의 경우 대표적으로 누적원산지에 대한 규정으로 인하여 원사 생산에 대한 중국의 생산기지의 역할을 베트남 등 TPP 역내 국가로 집중될 것으로 판단
- 메가 FTA로 인한 권역 내 GVC의 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현지진출 기업들이 받는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극복을 위해선 핵심부분에 집중하며 기타 업무는 아웃소싱하는 구조조정이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이 기타 업무 등을 원활히 아웃소싱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파트너 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필수

- 앞장의 설문조사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아웃소싱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공급받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음
- KOTRA가 각 무역관의 조사인력을 활용한 해당지역 혹은 인근 지역의 한국 및 해외기업의 리스팅을 작성할 필요성 있음
- KOTRA의 경우 오랜기간 무역관을 통한 한국의 해외진출 기업 혹은 수출기업의 바이어를 찾아서 매칭하는 노하우 축적
- 고객 기업의 연결 측면 이상의 기타 지원 서비스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목적으로 한 리스팅 필요성
- 리스팅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물류 및 유통, 마케팅&서비스센터, ICT서비스, 일반관리 및 경영, R&D디자인 혹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의 지원업무로 구분하여 리스팅화 가능
- 기존의 현지 진출 기업을 통하여 기초자료 구축 가능
- 지역, 서비스 가능 범위, 평가 등의 내용 리스팅화
-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에도 유용한 정보로 이용 가능
-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 시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동반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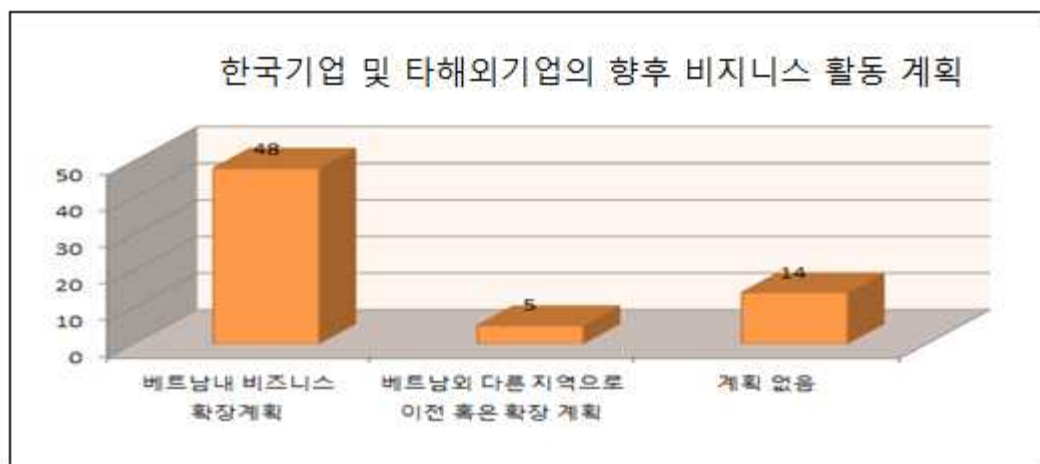
2. GVC 상의 베트남의 중요성 및 진출 전략

(1) 베트남 진출 전략

- GVC 상의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FDI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
- 동일한 트렌드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TPP 타결 및 앞으로 진행될 RCEP등의 참여로 인하여 베트남으로의 FDI를 통한 다국적기업들의 진출은 급격히 증가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기존의 중국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이동이 예상
-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설문응답에도 대부분의 기업이 확장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베트남 내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것으로 응답함
- 전체 조사기업 67개 중 72%인 48개의 기업이 베트남 내 비즈니스 확장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확장계획을 가진 기업 53개 중에선 90%가 넘는 기업이 베트남 내 비즈니스 확장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그림 V-1〉 베트남 조사기업의 향후 비즈니스 확장 계획



-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내에서의 노동비용상승 등 생산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되며, 베트남 정부의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유인책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실태 조사 결과 최근 베트남의 산업단지를 활용한 법인세 혜택 등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렴한 인건비를 고려한 생산시설의 투자는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베트남 현지실사 방문에서도 섬유산업 내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봉제공장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정부가 허가를 지양함
- 또한 현지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인력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수 지적함
 -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행정 및 절차 혹은 행정 서비스 등의 애로사항 다음으로 다수 지적됨
 - 조사 결과를 통하여 베트남의 저비용의 인력에 대한 인력확보 측면에 현지기업들이 점차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해석
 - <그림 V-2> 참조

<그림 V-2> 베트남 조사기업의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 이러한 배경에서 베트남에 기존의 베트남의 투자전략도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 산업은 베트남 정부의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반대로 High-Tech를 활용한 생산시설 투자에 초점을 둘 경우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여지 큼

- 예를 들어 High-Tech 인증을 베트남 정부에 받을 경우 4년간 법인세 면제, 9년간 50% 법인세의 혜택

○ 산업단지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FDI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High-Tech 인증과 같은 전략적 선택 필요

- 최근 개정된 베트남의 하이테크 인증 목록 별첨 첨부³¹⁾

(2) 최종소비마케팅으로의 향후 베트남 활용전략 및 가능성

○ TPP의 타결로 향후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저렴한 노동비용만을 활용한 단순조립의 경우 베트남에서의 그 수명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

○ 반대로 빠른 경제성장과 인건비 상승은 베트남의 1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고려할 때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베트남 내에서 생산 후 선진국으로 판매하는 전략과 동시에 향후 국내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와 노하우 구축 또한 필요

31)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No. 66/2014/QĐ-TTg of November 25, 2014 참조

- 이러한 베트남에서의 현지화 전략은 향후 주변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메가FTA 국내 수출 활용 방안

(1) 양자간 FTA를 활용한 자본재 수출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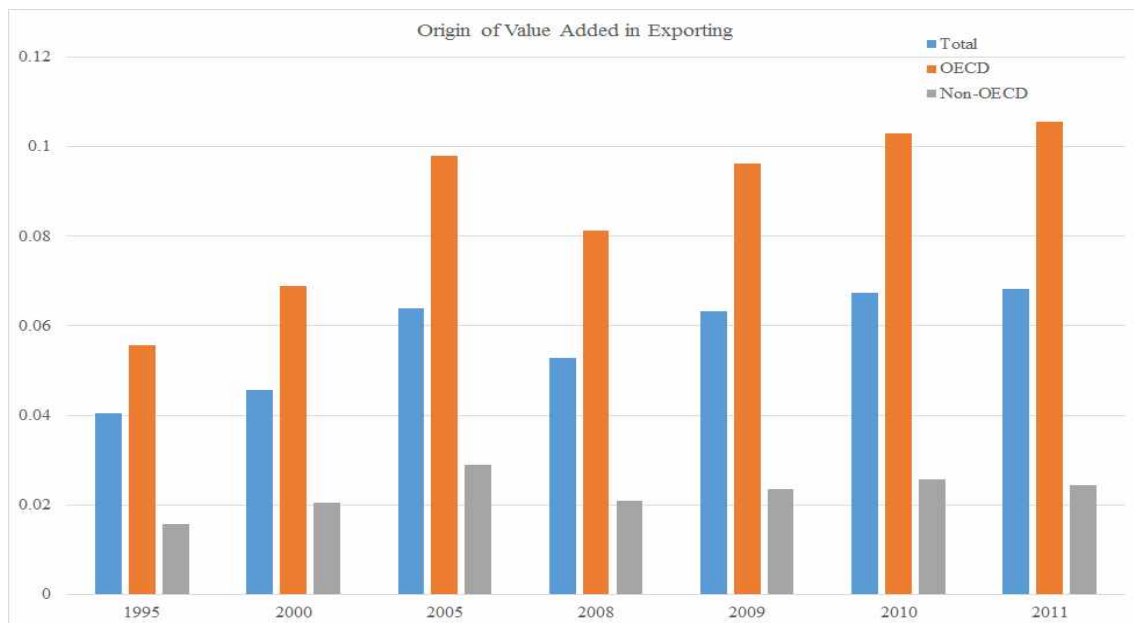
- GVC의 확산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의 이전은 더욱 빠르게 증가
- 특히 최근 TPP의 타결로 TPP 참여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의 이전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생산시설을 위한 자본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 한국의 자본재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0% 상회
 - 참조 <표 IV-1>
- 자본재의 경우 대상국에 수입이 된 이후 현지에서 이용된다는 점에서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있을 경우 TPP 가입 없이도 권역 내 국가의 비관세혜택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음
 - 예를 베트남에 수출한 후 추가적인 공정을 통하여 다른 TPP 권역으로 재 수출하지 않는 자본재의 경우 한-베트남 FTA를 통하여 비관세 혜택 가능
 - TPP 참여국의 많은 국가와 양자간 FTA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재 수출의 증대 효과가 예상됨

(2) 메가 FTA시대의 수출증대 전략

- 반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누적 조항에 Yarn Forward와 같이 불인정공정리스트가 있는 상품을 제외하면, TPP가입으로 인한 배타적 비관세 혜택은 적을 것으로 판단

- 하지만 메가 FTA의 체결은 전 세계 전반적인 무역 및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GVC가 확산 됨을 의미
- 이러한 상황 속에 국내 기업은 핵심 기능 중 한국에서 생산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부분은 GVC상의 우월 지역에 진출하거나 아웃소싱 해야 할 필요성 증대
- 2005년 이후 OECD국가의 제조업 수출에 한국의 중간재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Non-OECD의 경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GVC상에서 국내 생산이 점차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선진국 수출의 중간재로서의 기여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Non-OECD의 경우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진출로 해당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림 V-3> 참조

〈그림 V-3〉 OECD와 Non-OECD 국가 수출의 한국 부가가치 기여



출처: OECD Ti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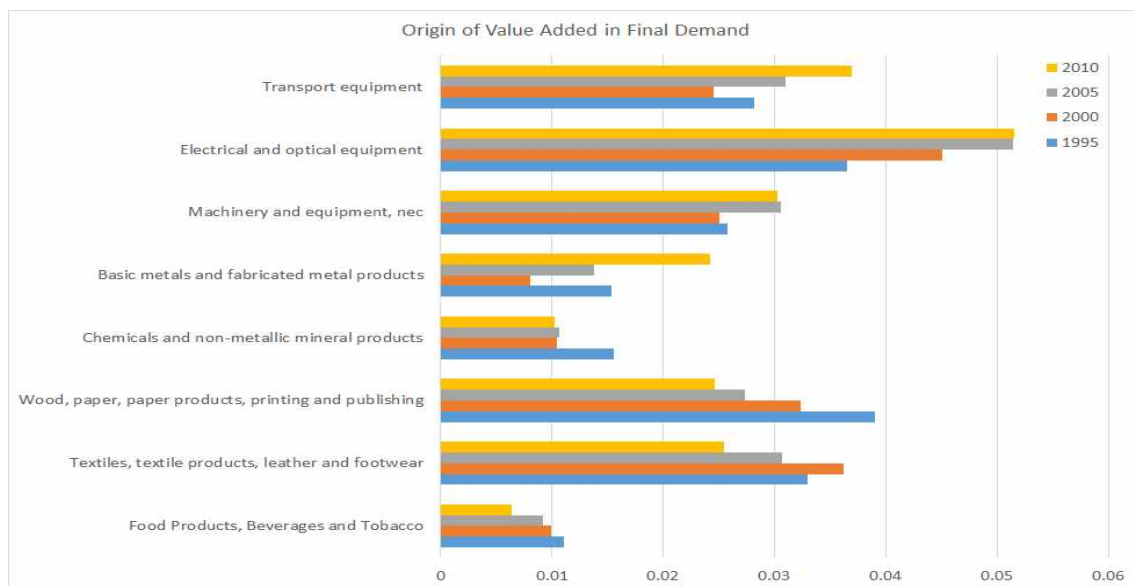
- 한국 내 생산과 수출을 통한 GVC 내 경쟁력은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

고 있음

○ 수송장비산업, 전기전자산업, 기계장비산업 그리고 금속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생산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화학산업, 목재 및 종이산업, 섬유산업 그리고 식음료산업의 경우 국내생산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전 세계 최종재의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수송장비산업, 전기전자산업, 기계장비산업 그리고 금속산업의 경우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³²⁾
- 반면, 화학산업, 목재 및 종이산업, 섬유산업 그리고 식음료산업의 경우 전 세계 최종재에의 한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
- 이는 해외생산시설의 확대 혹은 경쟁력 상승/하락 등으로 인한 국내 생산과 수출의 GVC 상의 변화를 보여줌
- 〈그림 V-4〉 참조

〈그림 V-4〉 산업별 전 세계 최종재의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 변화



출처: OECD TiVA

32) OECD TiVA 자료의 한계로 APEC, NAFTA, Europe을 전세계로 고려

- 하지만 이러한 산업 내에서도 각 기능 단위로 다른 변화가 있을 것임으로 수출 증대를 위한 정확한 개별 산업 혹은 업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³³⁾

33) 최근의 연구동향에 따르면 아웃소싱의 패턴 등이 산업별 특징이 아닌 기능별, 업무별 특징을 고려한 분석이 주를 이룸

VI. 결론

- 해당 보고서는 최근 국제 경제의 가장 핵심 현상이 GVC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이론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함
- 또한 최근 전 세계 무역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최근의 메가 FTA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메가 FTA가 GVC하에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하려고 함
- GVC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보고서는 GVC 확대는 기업 내 핵심기능에 집중하고 기타 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하여 경쟁력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퇴출될 것이라는 결론 도출
- 또한 메가 FTA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최근 타결된 TPP의 경우 누적조항에 완전누적으로 인하여 참여국 중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TPP 역내 투자 증가는 지역 내의 노동비용 혹은 생산비용의 증가시켜 기업 간의 경쟁을 심화를 촉진 시킬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비핵심 혹은 지원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지원이 우리기업의 GVC 참여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
- 이를 위한 각 지역별 현지기업의 주요 업무 및 역량 등의 리스팅 정보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
- 또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GVC는 앞으로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 기업의 GVC 참여도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아세안 내 베트남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이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베트남 내 투자의 증대로 노동비용 등의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기능과 업무의 전문화 필요

- 동시에 해당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잠재소비시장으로서의 베트남 혹은 아세안에 대한 전략 또한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
- 한국 내 생산과 수출을 통한 GVC 참여는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 수송장비산업, 전기전자산업, 기계장비산업 그리고 금속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GVC 참여가 확대되는 반면 화학산업, 목재 및 종이산업, 섬유산업 그리고 식음료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을 통한 GVC 참여가 축소
- TPP 타결로 인한 수출의 변화는 완전누적 적용과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다수의 TPP 참여국과의 양자간 FTA를 활용할 경우 일부 불인정공정리스트에 해당 되는 상품의 경우 수출 감소가 발생할 위험 존재
 - 하지만 이러한 수출의 변화는 산업별 그리고 산업 내에서도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됨
 - 특히 불공정리스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반면 TPP로 인하여 역내 생산시설의 증가는 TPP 권역내 개발도상국에 자본재 수출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베트남 양자간 FTA를 활용하여 자본재 등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복수 간 메가 FTA를 통하여 세계화가 촉진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아웃소싱과 전문화를 통하여 국내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가 수출 증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참고문헌〉

- Abreu, M.D. 2013.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 Bernard, Andrew B. & Redding, Stephen J. & Schott, Peter K. , 2009. "Products and Productivity,"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Wiley Blackwell, vol. 111(4), pages 681–709, December
- Coase, Ronald.,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Blackwell Publishing) 4 (16): 386–405
- Ekholm, Karolina & Forslid, Rikard & Markusen, James R., 2007. "Export-Platform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MIT Press, vol. 5(4), pages 776–795, 06.
- Gereffi, Gary., 1994. “The Organization of Buyer-Driven Global Commodity Chains: How U.S. Retailers Shape Overseas Production Networks“, in G. Gereffi and M. Korzeniewicz (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Westport: Praeger, pp. 95–122.
- Gereffi, Gary & Humphrey, John & Sturgeon, Timothy,. 2005.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2, No. 1. pp78–104
- Helpman, Elhanan., 1984 “A Simpl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 451–471.
- OECD., 2015,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Reducing Trade Costs for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 OECD., 2003.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Markusen, James R., 1984, “Multinationals, Multi-Plant Economies, and the Gains from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6 (3), 205-226.
- Ticon Development Consulting., 2013 “Cross-Cumulation in Free Trade Agreements: Opportunities, Potential and Challenges”, Grundlagender Wirtschaftspolitik NR. 21
-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UNCTAD
- WTO Doc., WT/REG/W/45, pp. 2-3.
- WTO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Job No. (01)/131.
- Yi, Kei-mu., 2003, "Can Vertical Specialization Explain the Growth of World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 111(1), pp. 52-102, February.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3-73, 2003.
- OECD TiVA Data
- UNCTAD
-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WTO 원산지규칙협정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별첨 1〉 NAFTA와 TPP내 완전누적 규정 비교

- FTA의 대표적인 완전 누적규정의 사례인 NAFTA의 누적조항과 최근 타결된 유일한 복수국간 메라 FTA인 TPP의 누적조항의 비교
- NAFTA의 누적조항의 경우 “어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국의 일방 또는 복수국의 영역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상품의 생산은, 특혜 관세 대우를 요구하는 당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으로, (a)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all non-originating materials)가 당사국들 중 전적으로 하나 또는 양자의 영역에서 부속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b) 당해 상품이 본 장의 다른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당사국 중 여하한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³⁴⁾
- TPP에서는 “각 당사국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당사국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영역에서 어떠한 비원산지 재료(a non-originating material)를 갖고 수행된 생산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생산이 당해 재료 자체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상품의 원산지 함량에 산입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³⁵⁾고 명시함으로써 완전 누적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TPP의 완전 누적 규정의 경우 NAFTA 완전 누적 규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특혜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커짐

34) NAFTA 제404조: Accumulation

35) TPP Article 3.10: Accumulation

〈별첨 2〉 대TPP 국가의 산업별 수출에 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
(참고: TiVA Data)

Total Manufacturing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66%	0.74%	0.63%	0.57%	0.61%
Japan	0.33%	0.43%	0.68%	0.62%	0.75%
Canada	0.54%	0.80%	0.83%	0.89%	0.86%
Australia	0.50%	0.55%	0.41%	0.55%	0.48%
Mexico	0.69%	1.24%	1.93%	2.18%	1.93%
Malaysia	1.46%	2.76%	3.35%	2.96%	2.42%
Singapore	2.37%	1.74%	0.90%	1.24%	1.59%
Chile	0.23%	0.17%	0.24%	0.23%	0.19%
New Zealand	0.41%	0.32%	0.35%	0.42%	0.39%
Vietnam	4.59%	5.22%	4.61%	4.62%	5.13%
Brunei	0.60%	0.43%	0.66%	0.71%	0.76%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1%	0.01%	0.01%	0.01%	0.01%
Japan	0.03%	0.03%	0.03%	0.03%	0.04%
Canada	0.01%	0.01%	0.01%	0.01%	0.01%
Australia	0.01%	0.01%	0.01%	0.01%	0.02%
Mexico	0.00%	0.00%	0.00%	0.00%	0.00%
Malaysia	0.01%	0.04%	0.05%	0.06%	0.07%
Singapore	0.16%	0.16%	0.10%	0.15%	0.12%
Chile	0.00%	0.00%	0.00%	0.00%	0.00%
New Zealand	0.01%	0.01%	0.02%	0.04%	0.03%
Vietnam	0.03%	0.04%	0.06%	0.13%	0.14%
Brunei	0.00%	0.00%	0.00%	0.02%	0.02%

Textiles, textile products, leather and footwear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50%	0.51%	0.21%	0.08%	0.09%
Japan	0.42%	0.44%	0.31%	0.20%	0.23%
Canada	0.59%	0.61%	0.23%	0.14%	0.15%
Australia	0.38%	0.22%	0.18%	0.11%	0.11%
Mexico	0.73%	1.10%	0.49%	0.37%	0.26%
Malaysia	0.94%	0.88%	0.54%	0.61%	0.48%
Singapore	1.90%	1.82%	0.57%	0.80%	0.69%
Chile	0.42%	0.27%	0.23%	0.24%	0.23%
New Zealand	0.40%	0.27%	0.24%	0.24%	0.21%
Vietnam	4.62%	7.14%	5.63%	2.98%	1.54%
Brunei	2.20%	0.75%	0.41%	0.64%	0.35%

Wood,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3%	0.04%	0.04%	0.04%	0.04%
Japan	0.02%	0.03%	0.05%	0.04%	0.09%
Canada	0.03%	0.01%	0.01%	0.01%	0.01%
Australia	0.06%	0.10%	0.08%	0.07%	0.13%
Mexico	0.03%	0.03%	0.03%	0.03%	0.03%
Malaysia	0.18%	0.21%	0.37%	0.26%	0.14%
Singapore	0.21%	0.25%	0.05%	0.33%	0.12%
Chile	0.02%	0.02%	0.02%	0.02%	0.02%
New Zealand	0.06%	0.06%	0.09%	0.11%	0.10%
Vietnam	0.64%	0.68%	0.98%	0.62%	0.55%
Brunei	0.00%	0.00%	0.00%	0.00%	0.00%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1%	0.00%	0.00%	0.00%	0.00%
Japan	0.01%	0.01%	0.01%	0.01%	0.01%
Canada	0.00%	0.00%	0.00%	0.00%	0.00%
Australia	0.00%	0.00%	0.00%	0.00%	0.00%
Mexico	0.00%	0.00%	0.00%	0.00%	0.00%
Malaysia	0.00%	0.02%	0.00%	0.00%	0.00%
Singapore	0.02%	0.03%	0.03%	0.17%	0.16%
Chile	0.00%	0.00%	0.00%	0.00%	0.00%
New Zealand	0.00%	0.00%	0.00%	0.00%	0.00%
Vietnam	0.01%	0.01%	0.08%	0.05%	0.05%
Brunei	N/A	0.00%	0.00%	0.00%	N/A

Pulp,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3%	0.04%	0.04%	0.04%	0.04%
Japan	0.02%	0.03%	0.05%	0.04%	0.09%
Canada	0.03%	0.01%	0.02%	0.01%	0.01%
Australia	0.10%	0.15%	0.11%	0.12%	0.21%
Mexico	0.04%	0.03%	0.04%	0.03%	0.03%
Malaysia	0.69%	0.72%	0.66%	0.43%	0.29%
Singapore	0.22%	0.25%	0.05%	0.34%	0.11%
Chile	0.02%	0.03%	0.03%	0.02%	0.02%
New Zealand	0.08%	0.08%	0.16%	0.22%	0.20%
Vietnam	1.79%	1.73%	1.98%	1.20%	1.16%
Brunei	0.00%	0.00%	0.00%	0.00%	0.00%

Chemicals and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10%	0.11%	0.15%	0.13%	0.14%
Japan	0.11%	0.14%	0.30%	0.29%	0.40%
Canada	0.26%	0.24%	0.17%	0.13%	0.14%
Australia	0.40%	0.27%	0.23%	0.15%	0.16%
Mexico	0.08%	0.14%	0.24%	0.28%	0.26%
Malaysia	0.51%	0.79%	0.80%	0.71%	0.69%
Singapore	0.56%	0.40%	0.36%	0.84%	0.77%
Chile	0.18%	0.15%	0.34%	0.43%	0.37%
New Zealand	0.47%	0.26%	0.23%	0.32%	0.33%
Vietnam	2.65%	2.20%	3.04%	3.21%	3.24%
Brunei	0.02%	0.02%	0.14%	0.06%	0.14%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1%	0.01%	0.01%	0.01%	0.01%
Japan	0.03%	0.08%	0.09%	0.08%	0.12%
Canada	0.01%	0.05%	0.02%	0.03%	0.02%
Australia	0.04%	0.38%	0.08%	0.07%	0.08%
Mexico	0.00%	0.01%	0.02%	0.08%	0.06%
Malaysia	0.17%	0.08%	0.07%	0.09%	0.06%
Singapore	0.38%	0.49%	0.51%	1.59%	1.56%
Chile	0.02%	0.04%	0.07%	0.23%	0.04%
New Zealand	0.01%	0.01%	0.04%	0.19%	0.18%
Vietnam	0.90%	0.51%	1.80%	1.48%	1.47%
Brunei	0.00%	0.00%	0.00%	0.00%	0.00%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6%	0.06%	0.13%	0.10%	0.12%
Japan	0.08%	0.08%	0.26%	0.28%	0.39%
Canada	0.07%	0.07%	0.14%	0.10%	0.10%
Australia	0.21%	0.10%	0.16%	0.09%	0.09%
Mexico	0.05%	0.07%	0.17%	0.24%	0.22%
Malaysia	0.49%	0.73%	0.89%	0.79%	0.77%
Singapore	0.29%	0.12%	0.19%	0.39%	0.37%
Chile	0.06%	0.06%	0.27%	0.26%	0.31%
New Zealand	0.39%	0.18%	0.25%	0.21%	0.24%
Vietnam	3.59%	2.46%	2.52%	3.23%	3.12%
Brunei	0.06%	0.10%	0.16%	0.06%	0.09%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8%	0.09%	0.07%	0.07%	0.08%
Japan	0.06%	0.13%	0.09%	0.09%	0.11%
Canada	0.40%	0.23%	0.10%	0.05%	0.06%
Australia	0.32%	0.12%	0.08%	0.23%	0.24%
Mexico	0.09%	0.16%	0.10%	0.11%	0.13%
Malaysia	0.17%	0.39%	0.32%	0.36%	0.36%
Singapore	0.50%	0.45%	0.08%	0.21%	0.21%
Chile	0.43%	0.21%	0.13%	0.09%	0.10%
New Zealand	0.41%	0.13%	0.08%	0.07%	0.07%
Vietnam	1.97%	2.97%	1.64%	1.59%	1.78%
Brunei	0.00%	0.20%	0.00%	0.18%	0.39%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1%	0.02%	0.02%	0.02%	0.02%
Japan	0.02%	0.02%	0.03%	0.03%	0.03%
Canada	0.02%	0.01%	0.01%	0.01%	0.02%
Australia	0.02%	0.10%	0.05%	0.02%	0.02%
Mexico	0.01%	0.06%	0.12%	0.01%	0.01%
Malaysia	0.07%	0.20%	0.11%	0.06%	0.08%
Singapore	0.26%	0.16%	0.10%	0.12%	0.07%
Chile	0.01%	0.01%	0.06%	0.05%	0.12%
New Zealand	0.02%	0.02%	0.03%	0.02%	0.03%
Vietnam	0.34%	0.11%	0.06%	0.08%	0.07%
Brunei	0.00%	0.00%	0.00%	0.00%	0.00%

Basic metals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18%	0.20%	0.30%	0.42%	0.60%
Japan	0.47%	0.30%	0.80%	0.81%	0.96%
Canada	0.11%	0.29%	0.32%	0.37%	0.59%
Australia	0.19%	0.36%	0.31%	0.50%	0.33%
Mexico	0.10%	0.33%	0.40%	0.30%	0.19%
Malaysia	2.39%	2.97%	3.19%	2.48%	2.88%
Singapore	0.99%	1.61%	0.81%	0.90%	0.85%
Chile	0.03%	0.04%	0.06%	0.06%	0.06%
New Zealand	0.41%	0.23%	0.51%	0.28%	0.21%
Vietnam	4.13%	4.20%	5.77%	7.01%	7.78%
Brunei	0.53%	0.30%	0.00%	0.26%	0.51%

Fabricated metal products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5%	0.06%	0.05%	0.06%	0.06%
Japan	0.03%	0.04%	0.04%	0.05%	0.06%
Canada	0.45%	0.08%	0.05%	0.03%	0.03%
Australia	0.09%	0.18%	0.04%	0.05%	0.05%
Mexico	0.20%	0.25%	0.19%	0.56%	0.65%
Malaysia	0.18%	0.50%	0.65%	0.34%	0.41%
Singapore	0.25%	0.43%	0.19%	0.36%	0.31%
Chile	0.06%	0.03%	0.02%	0.07%	0.09%
New Zealand	0.09%	0.11%	0.11%	0.21%	0.21%
Vietnam	2.78%	1.46%	0.85%	1.37%	1.56%
Brunei	0.19%	0.15%	0.15%	0.14%	0.18%

Machinery and equipment, nec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8%	0.12%	0.19%	0.25%	0.27%
Japan	0.03%	0.05%	0.12%	0.14%	0.16%
Canada	0.14%	0.10%	0.15%	0.22%	0.22%
Australia	0.04%	0.06%	0.07%	0.11%	0.10%
Mexico	0.13%	0.14%	0.18%	0.51%	0.43%
Malaysia	0.53%	0.39%	0.84%	0.51%	0.63%
Singapore	0.47%	0.42%	0.25%	0.38%	0.38%
Chile	0.22%	0.10%	0.08%	0.09%	0.07%
New Zealand	0.04%	0.04%	0.14%	0.12%	0.13%
Vietnam	1.86%	2.21%	3.38%	2.93%	2.77%
Brunei	0.14%	0.18%	0.09%	0.00%	0.17%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2%	0.03%	0.05%	0.07%	0.07%
Japan	0.02%	0.03%	0.08%	0.11%	0.14%
Canada	0.01%	0.03%	0.07%	0.10%	0.10%
Australia	0.05%	0.07%	0.08%	0.17%	0.21%
Mexico	0.05%	0.14%	0.29%	0.52%	0.49%
Malaysia	0.16%	0.30%	0.82%	0.79%	0.59%
Singapore	0.07%	0.28%	0.05%	0.50%	0.51%
Chile	0.05%	0.00%	0.04%	0.31%	0.35%
New Zealand	0.01%	0.06%	0.02%	0.04%	0.06%
Vietnam	0.19%	0.41%	0.81%	2.21%	2.82%
Brunei	0.00%	0.22%	0.07%	0.00%	0.11%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23%	0.40%	0.76%	1.15%	1.31%
Japan	0.03%	0.04%	0.08%	0.11%	0.12%
Canada	0.23%	0.54%	1.41%	1.97%	2.06%
Australia	1.06%	0.53%	0.36%	0.86%	0.84%
Mexico	0.03%	0.12%	0.21%	0.51%	0.56%
Malaysia	0.15%	0.24%	1.64%	0.47%	0.53%
Singapore	0.78%	0.74%	0.61%	0.22%	0.25%
Chile	2.29%	0.99%	0.95%	0.95%	0.91%
New Zealand	0.55%	0.38%	0.04%	0.06%	0.08%
Vietnam	8.13%	2.35%	0.70%	0.96%	0.98%
Brunei	0.97%	0.37%	0.23%	0.22%	1.02%

Other transport equipment					
	1995	2000	2005	2010	2011
US	0.08%	0.12%	0.13%	0.17%	0.17%
Japan	0.07%	0.06%	0.06%	0.07%	0.07%
Canada	0.31%	1.86%	0.32%	0.94%	0.29%
Australia	0.07%	0.08%	0.08%	0.03%	0.07%
Mexico	0.02%	0.12%	0.05%	0.09%	0.08%
Malaysia	0.53%	3.37%	2.59%	3.05%	0.90%
Singapore	3.17%	3.42%	0.49%	1.70%	3.42%
Chile	0.01%	0.05%	0.05%	1.07%	0.57%
New Zealand	0.02%	0.03%	0.00%	0.01%	0.01%
Vietnam	7.43%	6.54%	0.09%	1.31%	0.29%
Brunei	0.00%	0.00%	0.00%	0.00%	0.00%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1995	2000	2005	2010	2011
US	1.02%	1.23%	0.71%	0.34%	0.31%
Japan	0.31%	0.51%	0.78%	0.53%	0.55%
Canada	0.55%	1.19%	0.99%	0.89%	0.71%
Australia	0.28%	0.38%	0.52%	0.48%	0.41%
Mexico	1.13%	1.85%	4.18%	4.57%	3.80%
Malaysia	1.10%	2.92%	4.15%	3.91%	2.92%
Singapore	2.60%	1.67%	0.85%	0.82%	1.10%
Chile	0.19%	0.10%	0.10%	0.18%	0.16%
New Zealand	0.11%	0.31%	0.12%	0.16%	0.15%
Vietnam	2.37%	2.56%	2.65%	5.54%	7.82%
Brunei	0.07%	0.21%	0.11%	0.05%	0.14%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equipment					
	1995	2000	2005	2010	2011
US	1.18%	1.35%	0.73%	0.32%	0.30%
Japan	0.33%	0.55%	0.83%	0.55%	0.55%
Canada	0.10%	1.41%	1.21%	1.00%	0.80%
Australia	0.31%	0.40%	0.58%	0.43%	0.33%
Mexico	1.92%	2.83%	5.95%	6.19%	5.22%
Malaysia	1.04%	3.04%	4.17%	3.88%	2.90%
Singapore	2.81%	1.74%	0.84%	0.77%	1.05%
Chile	0.18%	0.06%	0.06%	0.11%	0.09%
New Zealand	0.19%	0.71%	0.04%	0.06%	0.04%
Vietnam	2.78%	3.04%	3.25%	6.40%	8.85%
Brunei	0.06%	0.00%	0.00%	0.00%	0.00%

〈별첨 3-1〉 List of high Technologies Prioritized for Development
Investment

1.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manufacturing integrated microcircuits (IC);
2.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manufacturing high-definition displays;
3. Technology for developing operating systems for computers and mobile equipment, database management systems and base software providing value-added services;
4.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manufacturing embedded systems;
5. Technology for assuring high-level network security and safety and information confidentiality;
6.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7. Technology of distributed computing and high-performance computing;
8. Big data and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y;
9. Next-generation network technology (NGN, LTE-A, IMT-advanced);
10. Technology of virtualization and cloud computing;
11. Second-generation and next-generation digital television technologies;
12. Interactive television and hybrid television technologies;
13. Flexible electronics (FE) technology;
14. Bio-informatics technology;
15.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manufacturing control devices and power electronics converters for power industry and manufacturing mechanical engineering;
16. Technology for converting and storing renewable energy sources;
17. Aviation and space technology;
18.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manufacturing actuators, automatic control and monitoring units for complete equipment systems in oil refineries, power plants, cement plants, chains for food, pharmaceutical or fertilizer production or agricultural, forest, aquatic and marine product processing, and hydraulic works;
19.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manufacturing new-generation measuring equipment and devices;
20. Robot technology;
21. Computer-aided designing and manufacturing (CAD/CAM/CAE) technology,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FMS) technology, and computer-integrated manufacturing (CIM)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high-complexity products;

22. Technology for controlling mechanical engineering precision;
23. Technology for designing, manufacturing, installing and launching drilling platforms and extra-long and extra-heavy structures for petroleum industry;
24. New-generation drilling technology for petroleum exploration;
25.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building large-sized ships and ships with complex properties;
26.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manufacturing new-generation agricultural machinery;
27.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manufacturing technical high-precision molds;
28.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manufacturing advanced optical equipment systems;
29. Technology for designing and manufacturing equipment for imaging diagnosis and treatment for medical use, medical instruments using nuclear technology, and automatic fluid injection and transfusion equipment;
30. Technology for working materials with ultrasound, ignition, plasma or laser;
31. Technology for surface treatment and welding in special environments;
32. Low-temperature sterilization technology; technology for treating hazardous medical solid wastes with microwave or plasma;
33.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 technology, nano-electromechanical system (NEMS) technology and sensors on new principles;
34. Gene technology to be applied to diagnosis, examination and treatment;
35.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or producing recombinant vaccines and recombinant proteins;
36. Stem-cell technology to regenerate tissues and organs;
37. Animal tissue or embryo cell technology; technology for culturing plant cell tissues;
38.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or producing mono-clonal antibodies;
39. Genomics, proteomics and metabolomics technologies;
40. Microbiological technology for treat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41.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or producing new-generation biologicals for preservation and processing of agricultural, forest and aquatic products and pharmaceutical materials;
42.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new-generation pesticides, erogenous agents for aquatic animals and fertilizers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43.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 optoelectronics and photonics materials and metamaterials;

44.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high-class magnetic materials;
45.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special alloys;
46. Technology for 500-kA aluminum electrolysis;
47. Extraction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super-clean materials on an industrial scale;
48.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super-durable, ultra-light and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or materials for use in harsh environments;
49.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high-quality combinant polymer and composite polymer materials which are durable in tropical climate;
50.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bio-degradable polymers;
51.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high-class and environment-friendly special-use paints;
52. Catalytic and absorbent material technology for recycling oil deposits and waste oil into base oils of API group-II quality (or equivalent) or higher quality;
53.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special-use high-class technical rubber for machine building, electricity generation, electronics,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54.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high-class technical ceramics for electricity, electronic and machine building industries;
55.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special glass fiber and carbon fiber materials;
56. Nano-material technology;
57.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materials and products for transplanting in human body;
58.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chemicals and biologicals for use in automatic and complete testing systems.

〈별첨 3-2〉 List of Hi-Tech Products Eligible for Development
Promotion

1. Operating systems for computers and mobile equipment; database management systems; base software providing value-added services;
2. Software assuring high-level network security and safety and information confidentiality;
3. Multi-factor authentication software and solutions;
4. Software for identifying scripts, images, sounds, gestures, movements, thoughts and biometric factors;
5. Software for controlling next-generation network terminal devices. Soft phones and codecs for multi-service assistance on the next-generation network background;
6. Software for systems applyin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cards;
7. Software for processing bio-medical information;
8. Special-use background software for measurement and control;
9. Software and services to be applied to smart traffic control systems;
10. Service of designing and optimizing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ystems in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11. Service of integrating cloud-computing systems;
12. Service of integrating Internet IPv6, mobile Internet and new-generation web application systems;
13. Digital automatic data processing and transmission equipment;
14. Large-capacity data storage devices;
15. Smartcards and smartcard readers;
16. RFID cards and RFID card readers;
17. Equipment for identifying scripts, voices, images, gestures, movements, thoughts and biometric factors;
18. Equipment assuring high-level network security and safety and information confidentiality;
19. Smart-house equipment system;
20. Smart control equipment system for net houses and green houses;
21. Smart traffic control system;

22. Next-generation network equipment, software and accessories (NGN, LTE-A, IMT- advanced);
23. New-generation webcams; digital audio frequency amplifiers; digital amplifiers;
24. New-generation smart mobile terminal devices;
25. Receivers, transmitters and inverters for use in the second-generation and next- generation digital television;
26. New-generation indoor/outdoor radio access equipment;
27. Parallel computers, high-performance computers;
28. High-definition displays;
29. New-generation power electronics semi-conductor components;
30. Integrated microcircuits (IC);
31. Sensors and smart actuators;
32. Biological chips and sensors;
33. Flexible electronics (FE) products and circuits;
34.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 nano-electromechanical systems (NEMS) and equipment using these systems;
35. High-performance and high-quality small-sized power motors;
36. Power generation stations with an output of 50 MW or higher;
37. Generators for thermal power plants with an output of 600 MW or higher;
38. Power generation systems powered by wind, solar, tidal, sea wave or geothermal energy;
39. Transformers of 500 kV or higher;
40.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 system for power grids; digital relay protectors for the power system;
41. Smart solar/wind inverters; heavy-duty and environment-friendly solar power cells;
42. Power electronics converters used for power generation stations powered by renewable energies, smart power transmission, industrial electric drive systems, and large- current electrolytic source units for chemical and ore-sorting industries;
43. Heavy-duty batteries and accumulators; uninterrupted power supply (UPS) units using super-capacitors;
44. Digital measuring and observation equipment and tools;
45. Laser distance meters;

46. Calipers of all kinds with an accuracy of up to 10 micrometers (microns); micrometers of all kinds with high accuracy;
47. Profile projectors;
48. Digital machines and tools for measuring flow and pressure of fluids and gases;
49. Digital equipment and tools for physico-chemical analysis;
50. Digital equipment and tools for gauging viscosity, porosity, elasticity and surface strain;
51. Digital equipment and tools for metering heat, sound volume and light;
52. Digital oscilloscopes, spectral analyzers and radiation meters;
53. Automatic control and supervision units and actuators for complete equipment systems in petrochemical refineries, power plants, rotary cement kilns, chains for food, pharmaceutical or fertilizer production, or agricultural, forest, aquatic and marine product processing, and hydraulic works;
54. Computerized numerically controlling (CNC) units for machine tools and manufacturing machines;
55. Control devices and automatic systems for large gravity load lifting machines;
56. Automated balancing system in ships;
57. Large ship cranes and large gravity load hoists;
58. Large gravity load lifting devices;
59. Self-elevating drilling units, semi-submersible rigs for petroleum exploitation;
60. New-generation high-precision mechanical working central machines;
61. Opened-chain industrial robots, parallel robots with three or more degrees of freedom;
62. Special-use AC servo engines, multi-axial servo gearing systems, decelerator boxes of high precision for robots and CNC machines;
63. Technical high-precision molds;
64. New-generation cultivating, tending, harvest and post-harvest machinery;
65. Systems of equipment for industrial-scale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66. Imaging diagnosis equipment;
67.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s (PACS);
68. Automatic and complete testing systems;
69. Functional probes;

70.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diagnosis and treatment instruments;
71. Medical laser instruments;
72. Digital micro-surgical instruments;
73. Endoscopic device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74. Automated injection and transfusion equipment;
75. Chemicals and biologicals for automatic and complete testing systems;
76. Materials and products for transplanting in human body;
77. Complex optical microscopes;
78. High-quality lens, prisms, contact lenses;
79. Large-capacity laser machines (except laser diodes);
80. Satellites and satellite equipment;
81. Terminal transmitting and receiving equipment and stations of satellites;
82. Equipment applying global positioning system technology;
83. Aerial vehicles and software for processing data received from aerial vehicles;
84. New key plant varieties and animal breeds for export which are created on the background of cell technology and to be produced on an industrial scale and of high yield, disease-free and high quality;
85. High-quality, disease-free, high-yield and disease-resistant breeds of aquatic animals for industrial-scale production;
86. International-standard microorganism preparations for use in agriculture, preservation and processing of agricultural, forest, aquatic and marine products and environmental treatment;
87. International-standard new-generation fertilizers and plant protection drugs;
88. Plant growth regulators; international-standard new-generation erogenous agents for aquatic animals;
89. Kits for diagnosis of a number of plant and animal diseases;
90. Natural and synthetic hormones and pharmaceuticals containing hormones;
91. Recombinant ADN vaccines and recombinant protein vaccines used for humans, cattle, poultry and aquatic animals;
92. Multivalent vaccines;
93. Substitutive cells, tissues and organs created from stem cells;
94. Kits for diagnosis of diseases and control of food safety for humans;

95. Gene assessment service;
96. Semi-conductor materials for manufacture of integrated microcircuits (IC);
97. Materials for manufacture of micro-electromechanical components and sensors on new principles;
98. Optoelectronic and photonic materials;
99. High-purity materials manufactured by extraction technology on an industrial scale;
100. Super-elastic, super-durable, ultra-light and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101. Metal-matrix composite materials, polymer-matrix composites applied by electric and electronic techniques for use in harsh environments and construction which are durable in tropical climate;
102. Bio-degradable polymer materials; superabsorbent polymers made from domestic materials;
103. Environment-friendly high-class special-use paints;
104. Special-use technical rubber and synthetic rubber materials for machine building, electricity industry and electronics;
105. Technical ceramics for electric industry and electronics;
106. High-intensity carbon fibers for composite materials;
107. New materials for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108. High-class magnetic materials for use in the energy sector;
109. High-class nano-materials for industry, agriculture, health care, biology and environment;
110. Products covered with membranes manufactured by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and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technologies;
111. High pressure- and chemical corrosion-resistant composite tubes and fittings for industrial use;
112. Special alloy steel of high durability for industry and construction;
113. High-quality steel sheets, large-sized steel shapes and unwrought steel tubes;
114. High-class aluminum manufactured by 500-kA electrolytic technology.-

산업연구원

[작 성 자]

조재한 부연구위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김민지 연구원

-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GVC 참여 확대전략 수립 -
(KOTRA자료 15-063)

발행인 : 김 재 홍

발행처 : KOTRA

편집인 : 윤 원 석

발행일 : 2015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6926-35-2 (93320)

Copyright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